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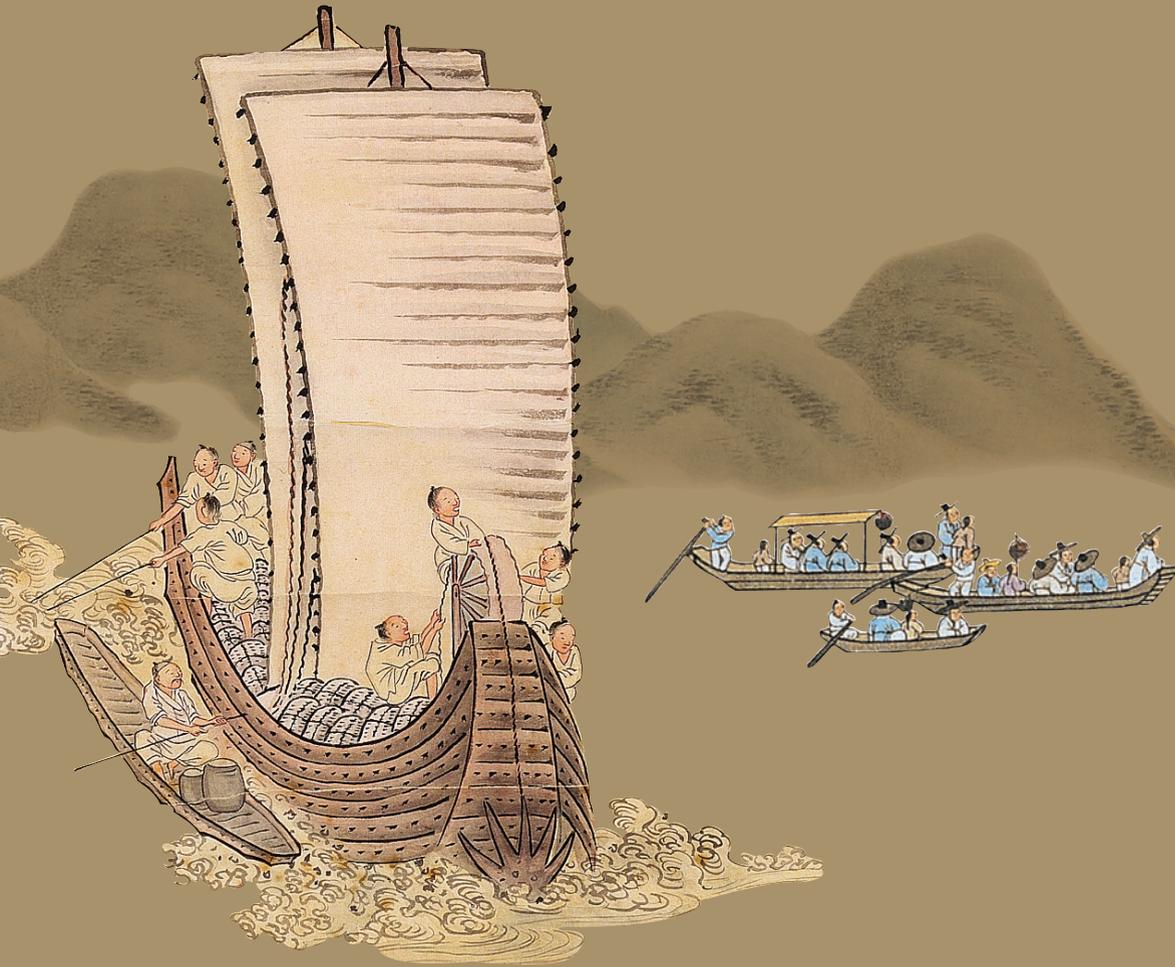
개관 8주년 기념

옛 영수증 자문 尺文 특별展

Special Exhibition of Receipts in the Past

차이민지리 옛세찬을 정경이다

Looking into the Old Days thru
a Small Piece of Paper



국세청 조세박물관

차이 먼 노래
Looking into the Old Days thru
a Small Piece of Paper

옛 세상에 정경이다



옛 영수증 자문 尺文 특별전 特別展을 열면서

조세박물관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세관련 역사적 유물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세금교육의 장(場)”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활성화와 관람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박물관을 리모델링 하여 다양한 역사적 유물을 새롭게 전시하고, 2008년부터 「수결」·「술과 세금」·「땅, 나눔과 소유」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개관 8주년을 기념하여 조세박물관이 많이 소장하고 있는 ‘자문(尺文: 조세·부과금·수수료 등을 받고 교부한 영수증)’을 주제로 특별기획전 「작은 문서로 옛 세상을 엿보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상설전시와 차별을 두어 어렵고 딱딱한 “세금”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고 밝은 분위기로 전시환경을 꾸몄습니다.

특히 이야기가 있는 자문으로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백성들이 나라에 바친 기부금 자문(尺文), 조선 후기 신임관료가 발령을 받은 후 중앙관청을 돌면서 수수료를 내고 이를 순서대로 모아 붙인 자문 등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삶을 작은 문서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세금으로 낸 곡식(稅穀)을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漕倉)으로 옮겼다가, 조운선(漕運船)을 이용하여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서울로 운반되는 과정을 기록한 담당 관리의 일지(日誌) ‘조행일록(漕行日錄)’과 ‘조운색자문(漕運色尺文)’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옛말에 “박고지금(博古知今)”이란 말이 있습니다. 널리 옛 일을 알면 오늘날의 일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이·청소년이 단순히 역사를 알고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 생활 속의 삶과 지혜 및 교훈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세박물관에서 처음 개최하는 ‘자문(尺文)기획전’을 통하여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뜻 깊고 의미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획전을 위해 도움을 주신 국립중앙도서관과 신한은행 한국금융사박물관,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세박물관은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는 물론 어린이·청소년이 미래의 성실납세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10.

국 세 청 장 이 현 동
조세박물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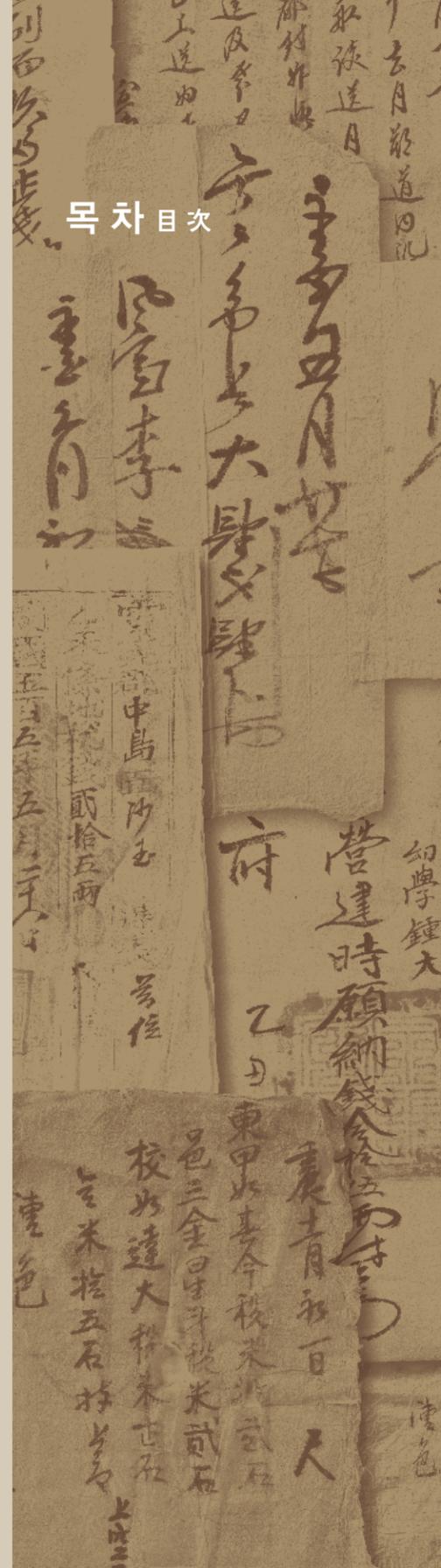
목 차 目次

- 인사말
옛 영수증 자문 특별전을 열면서 02
- 전시 개요
작은 문서로 옛 세상을 엿보다..... 06
- 유물 이야기
조선시대 세금영수증, 자문(尺文) 10
세금이 서울로 전달되다
공평한 세금을 위한 노력
-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
- 이종과세의 방지
자문 모음(尺文綴)
특이(特異)한 유형의 자문
이야기가 있는 자문 38
경복궁 중건
신임관리 부임 수수료
갑오개혁 이후 세금영수증 66
납세 영수증과 영수증 묶음
영수증 보관 주머니, 납세대
- 논고
안창렬(安昌烈)의 문경현감 부임시 자문철(尺文綴).... 86
- 도록 정보



일러두기

- 본 도록은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기획 <작은 문서로 옛 세상을 엿보다, 자문(尺文)> 展 전시도록이다.
- 유물크기는 표구 부분을 제외한 유물 자체의 크기로 통일하였으며, 단위는 세로 × 가로 × 두께(cm)로 표기하였다.
- 유물의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제응역 내용을 참조하였고, 탈초 및 정서작업(김성갑)과 교열(김건우) 및 교정(박기화)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 유물의 순서는 시대순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테마별로 구성하였다.



작은 문서로 ‘옛 세상’을 엿보다

최윤희(조세박물관 학예사)

1. 자문 尺文이란?

자문이란 조세·부과금·수수료 등을 받고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척문(尺文)이라고 쓰고 자문이라고 읽는다.

백성이 관부(官府)에 물건을 바치면,
관부에서 받은 물건을 적어 주는데, 이것을 자문이라 한다.
(凡人納物官府, 官府書所納物件以給, 謂之尺文.)

『조선왕조실록(世宗睿宗 7卷, 1年(1469 己丑) 8月 16日(丁卯) 4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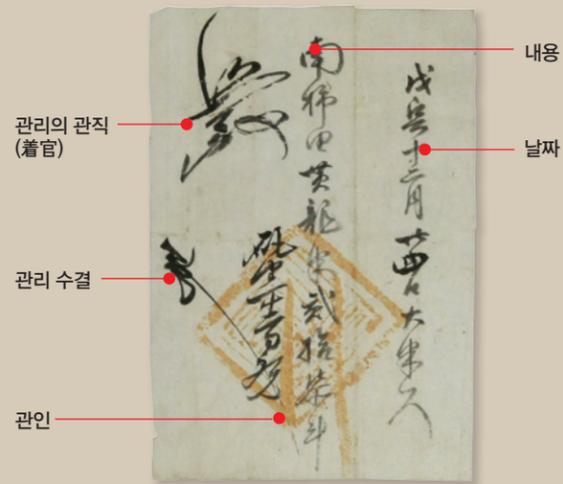
자문이란 실록에 나타난 것처럼 관부에서 백성에게 세금을 걷으면서 발급해 준 영수증 형태의 간단한 증서를 말하며, 조선후기에는 신임관료가 새로 부임하면서 중앙관서에 낸 수수료 영수증으로도 통용되었다. 따라서 자문(尺文)이란 작은 문서를 통하여 조선시대 이후 관료·조세·재정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백성들이 자문을 모으다

조선시대 백성들 중에는 자문을 모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제 강점기와 해방 무렵에는 일괄 모아둔 각종 납입 영수증 묶음이 발견되기도 한다. 특히 조세박물관 유물

중에는 한 사람이 한 해동안 토지세를 내고 받은 여러장의 자문을 모았거나 혹은 받은 자문 여러 점을 점련(粘連, 풀로 길게 덧붙임)하여 보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아래의 유물은 황룡(黃龍)이라는 한 사람이 여러해(1875~1894년)에 걸쳐 세금(田稅)을 납부하고 발급받은 자문(尺文) 6점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자문에는 발급한 날짜와 세금을 납부한 내용이 적혀 있고, 세무업무를 보는 관리의 관직과 수결(手決: 오늘날의 서명)이 왼쪽에 보인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관인이 내용 하단에 찍혀있다.



▲ 황룡의 자문 -3



▲ 남시전(南柿田)을 경작하는 황룡(黃龍)이 여러 해 동안(1875~1894년)에 걸쳐 세금(田稅)을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6장) 모습(발급자 : 감관(監官))

No	작성연대	규격(cm)	내용(正書)	납부사항
1	1875년 (乙亥年) 12월 19일	22×9.5	乙亥十二月十九日結尺 南柿田黃龍米四斗三刀 監官 (署押)	쌀 4말 3되
2	1876년 (丙子年) 2월 4일	20.5×13.1	丙子二月初四日大米尺 南柿田 中黃龍二十斗 合伊十斗 監官 (署押)	쌀 8말 1되 (황룡과 돌이가 함께 납부)
3	1878년 (戊寅年) 12월 24일	20.5×13.9	戊寅十二月廿四日大米尺 南柿田黃龍米貳拾柒斗 砲米一斗二刀九合 監官 (署押)	쌀 27말과 포미(砲米) ²⁾ 1말 2되 9홉
4	1881년 (辛巳年) 11월 16일	18.2×13.2	辛巳十一月十六日大米尺 南柿田黃龍米三十斗 砲米二斗三刀 監官 (署押)	쌀 30말과 포미 2말 3되
5	1891년 (辛卯年) 10월 28일	18.2×10.1	辛卯十月二十八日大米尺 南柿田黃龍米十八斗 監官 (署押)	쌀 18말
6	1894년 (甲午年) 11월 20일	23×10.5	甲午十一月二十日大米尺 南柿田黃龍米五十一斗四勺 砲米三斗七刀八合 監官 (署押)	51말 4작(勺) ³⁾ 과 포미 3말 7되 8홉

황룡(黃龍)이 모은 자문 중에서 하나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선 세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날짜인 무인년(戊寅年, 1878년) 12월 24일에 남시전(南柿田)을 경작하는 황룡(黃龍)이 토지세(結稅)로 특산물 대신에 쌀[大同米] 17말[斗],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신 내는 쌀[砲米] 1말[斗] 2되[刀] 9홉[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자의 관직(監官)과 수결을 비롯하여 내용 하단 중앙에 찍힌 관인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풍헌(風憲)¹⁾ 이(李) 아무개가 김씨 성(姓)인 상전의 사내중 명점(命占)에게 발급한 자문 21점도 모두 같은 해(辛酉年)의 2월, 3월, 4월, 5월, 8월, 10월에 작성되어 한 사람이 특정시기에 납부한 세금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풍헌(風憲) 이(李) 아무개가 김씨 성(姓)인 상전의 사내중 명점(命占)에게 발급한 자문 21점 중 일부



1) 풍헌(風憲)은 조선시대 면(面)이나 이(里)의 행정담당자로서 군수와 현감 등이 내리는 지시·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호적(戶籍)·수세(收稅) 업무 등을 맡아 보는 직임을 말한다.
 2) 포미(砲米) : 포랑미(砲糧米)라고도 하며, 진무영(鎭撫營, 조선 후기 강화도에 설치된 군영)에 필요한 물자(物資)로 징수하는 세미(稅米)를 말한다.
 3) 작(勺)은 1홉[合]의 1/10이며, 되[刀升]의 1/100.



3. 세금이 서울로 전달되다...

조운색자문 漕運色尺文과 조행일록 漕行日錄

고려·조선시대에는 각 도에서 징수한 세곡(稅穀)을 강변이나 해변의 창고(漕倉)에 보관하였다가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중앙의 창고(京倉)⁴⁾에 수송하였는데, 이를 조운제도(漕運制度)라 한다.

조세박물관 소장유물 중 조운과 관련된 유물인 조운색자문(漕運色尺文)은 각 지방에서 일정시기(11월 초1일~이듬해 정월)에 세금으로 낸 곡식(稅穀)을 걷어서(收稅) 창고(漕倉)에 들일 때 조색(漕色)⁵⁾이 발급해 준 자문(尺文)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걷은 세금은 어떻게 될까? 세금으로 걷은 곡식(稅穀)은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漕倉)으로 옮겨다가



▲ 조운색자문(漕運色尺文)

내륙의 강이나 바닷길로 조운선(漕運船)을 이용하여 서울로 운반되었다. 고종 11년(1874년 갑술) 12월 17일 함열현감 겸 성당창 조세영운관(咸悅縣監兼聖堂倉租稅領運官)에 임명된 조희백(趙熙百)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세곡을 싣고 바다를 건너 서울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의 운반 및 인수인계 과정을 조행일록(漕行日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란 일기 형태로 기록하였다.

▼ 조행일록 표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조운로정기(漕運路程記)



〈조희백(趙熙百) 1875년 3~4월 세곡의 운반 과정을 기록한 일지 요약〉

출발	이동	도착
호남지역 8개 읍의 대동세와 각 궁에 바칠 포량과 잡비 총합: 1만 6천여석 포장	서해안을 끼고 인천 월미도와 강화도를 지남	서울에 이르러 대궐에 들어가 인사를 올리고, 광흥창(廣興倉) ⁶⁾ 이 있는 서강으로 나와 호조판서(戶曹判書)의 점검을 받아 인계를 마친 뒤 집 도착
웅포(熊浦) 출발		서울 집 도착
1875년 3월 23일		1875년 4월 19일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4) 경창(京倉): 한양의 남쪽 강변에 설치된 중앙 창고를 말함

5) 조색(漕色): 조창 수납업무 및 조운선(漕運船)에 세곡을 싣는 등의 역할을 하는 관리

6) 광흥창(廣興倉): 고려·조선시대에 관리들의 녹봉(祿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풍저창과 함께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의 세곡을 수납하였다.

4. 이야기가 있는 자문 尺文

조세박물관 소장유물 중 경복궁 원납전 자문(景福宮願納錢尺文)은 흥선대원군 섭정 당시인 1865년 경복궁을 증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기부금 성격인 원납전을 걷어 들이면서 왕실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다. 이는 훗날 당백전 발행과 함께 흥선대원군을 기억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시대상이 반영된 유물이며 백성들이 원(願)해서 낸 원납전(願納錢)이 아니라, 원망(怨望)하며 낸 원납전(怨納錢)으로 불리었던 당시를 그려 보게도 한다.



▲ 당백전(當百錢)

오른쪽 자문은 1865년 5월 경복궁(景福宮) 영건(營建) 시 원납전 15냥을 낸 경명군(景明君)의 11대손 이종석(李鍾奭), 이종대(李鍾大)에게 종친부에서 발급한 영수증이고, 주화는 1866년 경복궁 증건 등으로 인한 국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발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물가상등과 체제위기를 초래한 대표적 악화(惡貨)인 당백전(當百錢)이다.

이 밖에도 조세박물관의 특색있는 자문 유물로는 조선 후기 새로 임명 받은 관원이 중앙의 유력한 관청(이조·상서원·의정부·승정원·홍문관·대비전 등)을 돌며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당시 관행을 엿볼 수 있는 유물로 '안창렬 자문(安昌烈尺文)'이 있다.

이 자문(尺文)에는 안창렬이 문경현감에 임명된 후 홍문관에 납부한 연회비용과 수령증 작성비용, 승정원에 납부한 문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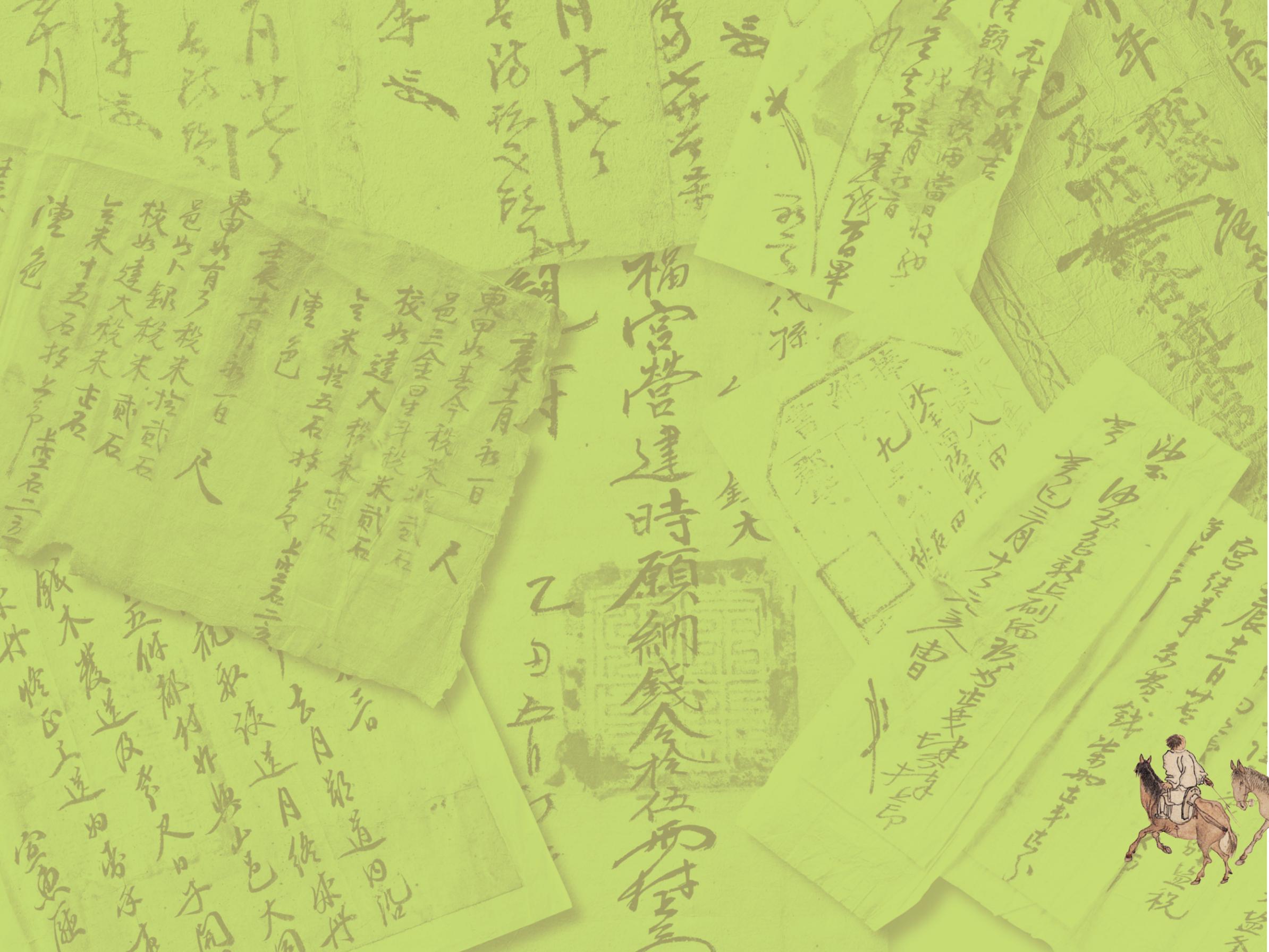
◀ 경복궁 원납전 자문(景福宮願納錢尺文)

작성해준 대가로 내는 비용, 이조에 납부한 문서작성 비용과 수령증 작성 비용, 사관원에 지급한 새로이 임명하는 명분의 잡세와 인사 발령 인준에 대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조선시대 후기 관료사회의 대표적인 악습(惡習)으로 여겨지지만 신임 관리가 14개나 되는 각 해당 중앙 관청을 돌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을 순서대로 모아서 보관한 것은 현존하는 자문(尺文) 중에서 아주 보기 드문 귀중한 유물이다.



▲ 문경현감(聞慶縣監)에 임명된 안창렬(安昌烈)이 1886년 12월~1987년 정월 임지로 부임할 때까지 중앙 관서에 납부한 각종 수수료 영수철

조세박물관이 개최하는 개관 8주년 기념 '자문 특별기획전'을 통하여 옛 영수증인 자문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특성 있고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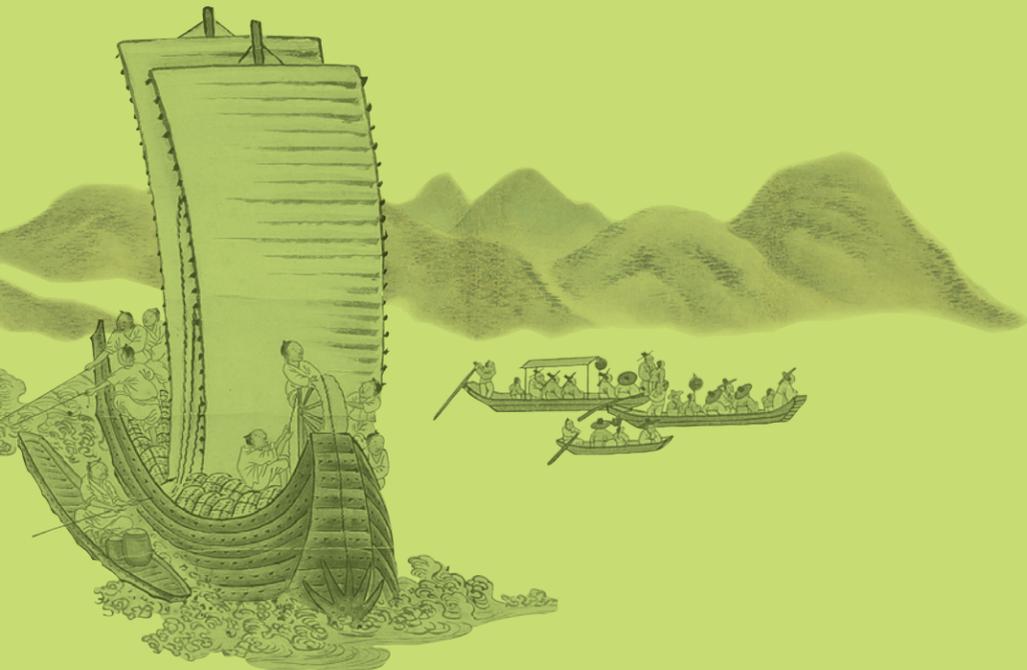


01

조선시대 세금영수증, 자문(尺文)



조선시대 세금영수증, 자문(尺文) 조운제도 漕運制度



세금이 서울로 전달되다 ... 조운제도(漕運制度)

조운제도(漕運制度)란 고려·조선 시대에 지방의 세곡(稅穀)을 서울로 수송하기 위하여 조창(漕倉) 즉, 강변에는 수운창(水運倉), 해변에는 해운창(海運倉)을 설치하여 세곡을 모으고, 매년 일정 기간에 선박(漕運船)을 통해 중앙의 경창(京倉)으로 수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운송 수단의 제약이 있던 전근대의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에서는 지방 물자를 중앙에 조달하기 위한 조운의 비중은 상당히 컸다.

고려 초기에는 수레를 활용한 육상교통을 주로 이용하였지만, 외적의 침입 등으로 쇠퇴하게 되고 조운제도가 마련되면서 수상교통이 크게 발달하였다. 하지만, 고려 말 왜구의 침입 등으로 창고가 많이 파괴되어 조운이 불가하게 되자 조선 초에 이를 보수·증설하게 된다. 특히 태조(太祖)는 한강과 예성강, 임진강의 수로와 서·남해의 해운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양을 수도로 정하는 등 조운활동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의 조운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반포를 계기로 정비되었는데, 당시 조선이 설치한 조창은 잉류지역*을 제외한 9개소로 그 중 4곳이 해안에, 5곳이 강변에 위치했다.

조운선(漕運船)을 이용한 관선조운(官船漕運) 체제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의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을 거치면서 붕괴되고, 조선 후기에는 조운선 부족 등의 이유로 조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명목상 존재하던 조창은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 때 조세의 금납화(金納化)가 시작되어 세금을 화폐로 내게 되면서 조운 제도는 서서히 폐지된다.

출처 : 박경룡, 「한강의 조운연구」, 『홍경만교수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2002.
김옥근, 「조선시대 조운제연구」, 『부산수산대논문집』 2, 1981, pp.65~83.
최완기, 「조선전기 조운시고」, 『백산학보』 20, 1976, pp.391~446.

* 잉류지역(仍留地域): 중앙의 경창(京倉)으로 조세미를 운반하지 않고 현지에서 군사비나 접대비 등으로 쓰도록 제도화된 지역(평안도·함경도·제주도)을 말한다. 전라도·충청도·황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으로,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이용해 경창으로 세곡을 운송하였지만,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에 가깝고 명(明)·청(淸)나라와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서 조세를 현지에서 사신접대비와 군사비로 사용하였으며, 제주도는 논의 거의 없어 쌀이 많이 나지 않으며 바닷길도 험하고 운송 거리가 멀어 잉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조운색 자문

漕運色尺文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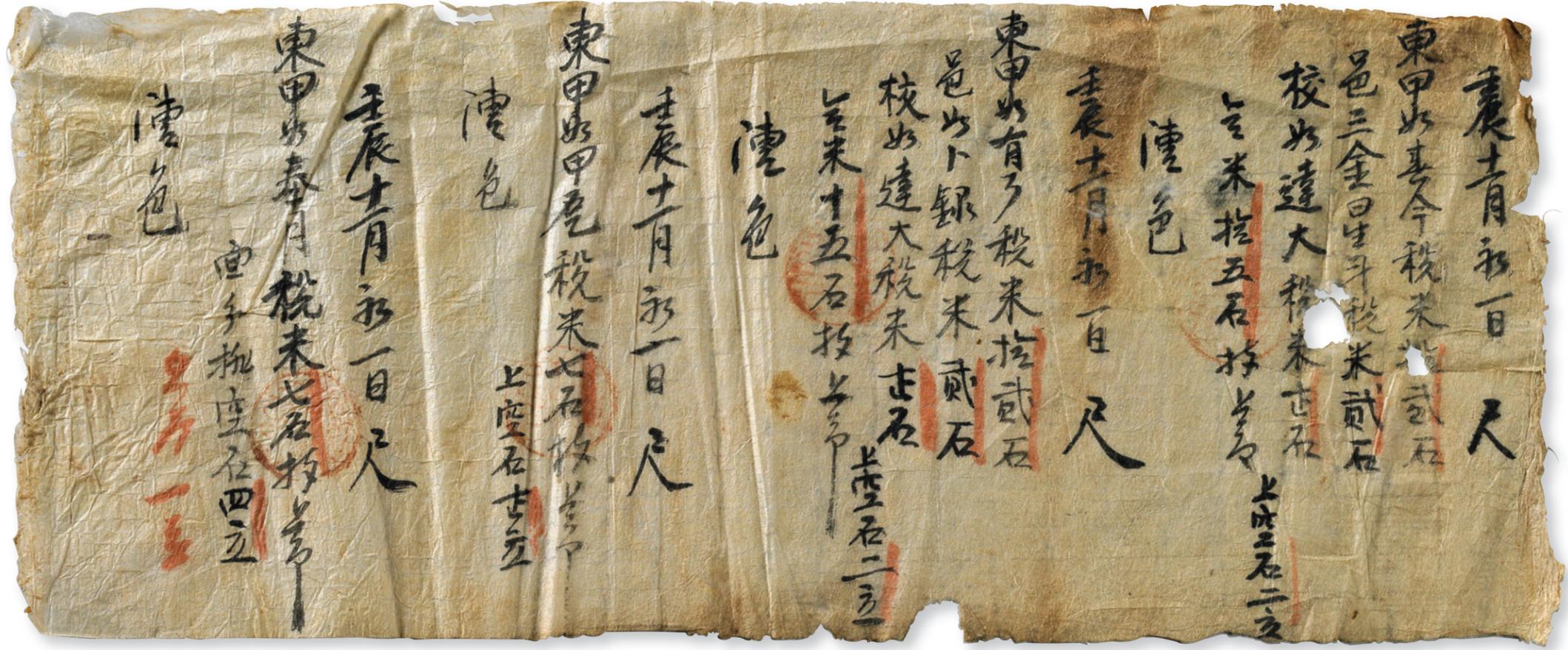
임진년(壬辰年, 연대미상) 11월 초1일

작성자 : 조색(漕色)

수취자 : 미상

17 × 39.5cm

임진년 11월 초1일에 조색(漕色)이 세미(稅米)를 받고 작성한 영수증.



4

3

2

1

위 자문은 모두 네 건의 사항을 한 문서에다 이어서 작성하였는데, 문서의 형식은 모두 동일하다. 처음에는 간지와 날짜를 쓰고, 다음에는 지역과 세미의 숫자를 쓰고 마지막에는 조색(漕色, 조운을 담당하는 관리)이라고 하였다.

모두 동갑(東甲)이라는 지역에서 수납한 세에 대하여 11월 초1일 일괄 작성한 것이다. 11월 초1일에서 이듬해 정월은 각 지방에서 세곡을 걷는 시기로, 이 때 세곡(稅穀)을 걷어서 창고(漕倉)에 들어면서 작성한 영수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서는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자문을 발급해 주기 위해 기록하였다가 실제로 발급해 주지 못한 불발문서(不發文書)로 추정된다. 만약 제대로 발급되었다면 조색의 수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네 건이 각각 분리되어 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운색자문은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의 조전조(漕轉條) 규정과 일치하는 11월 1일에 세곡수납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조색(漕色)'의 명칭이 보인다는 점, 그리고 공석(空石)에 대한 기록으로 인해 납부하는 세곡에 덧붙여 빈 가마니도 함께 백성들로부터 수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겠다.

No	내용	납부사항
1	壬辰十一月初一日 尺 東甲奴春今 稅米 拾貳石 邑三 金星斗 稅米 貳石 校奴 達大 稅米 正石 合米 拾五石 捧上印 上空石二立 漕色	임진년 11월 초1일 동갑에 거주하는 노비 춘금으로부터 세미 12석, 읍삼의 김성두로부터 세미 2석, 교노 달대로부터 세미 1석 합계 15석을 봉상(남부)받음.
좋은 품질의 빈 가마니(上空石) 2일을 여분으로 함께 받음 (운반하다가 손상될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빈 가마니를 공석이라 하며, 립은 가마니를 세던 단위이다.)		
2	壬辰十一月初一日 尺 東甲奴有 稅米 拾貳石 邑奴 卜錄 稅米 貳石 校奴 達大 稅米 正石 合米 十五石 捧上印 上空石二立 漕色	임진년 11월 초1일 동갑에 거주하는 노 유부로부터 세미 12석, 읍노 북록으로부터 세미 2석, 교노 달대로부터 세미 1석 합계 15석을 받음.
좋은 품질의 빈 가마니(上空石) 2일을 여분으로 함께 받음		
3	壬辰十一月初一日 尺 東甲奴甲 稅米 七石 捧上印 上空石正立 漕色	임진년 11월 초1일 동갑에 거주하는 노비 갑돌이로부터 세미 7석을 받음.
좋은 품질의 빈 가마니(上空石) 1일을 여분으로 함께 받음		
4	壬辰十一月初一日 尺 東甲奴奉月 稅米 七石 捧上印 面分排 空石四立 漕色	임진년 11월 초1일 동갑에 거주하는 노비 봉월로부터 세미 7석을 받음.
해당 면에 할당된 빈 가마니(空石) 4일을 여분으로 함께 받음.		



조행일록

漕行日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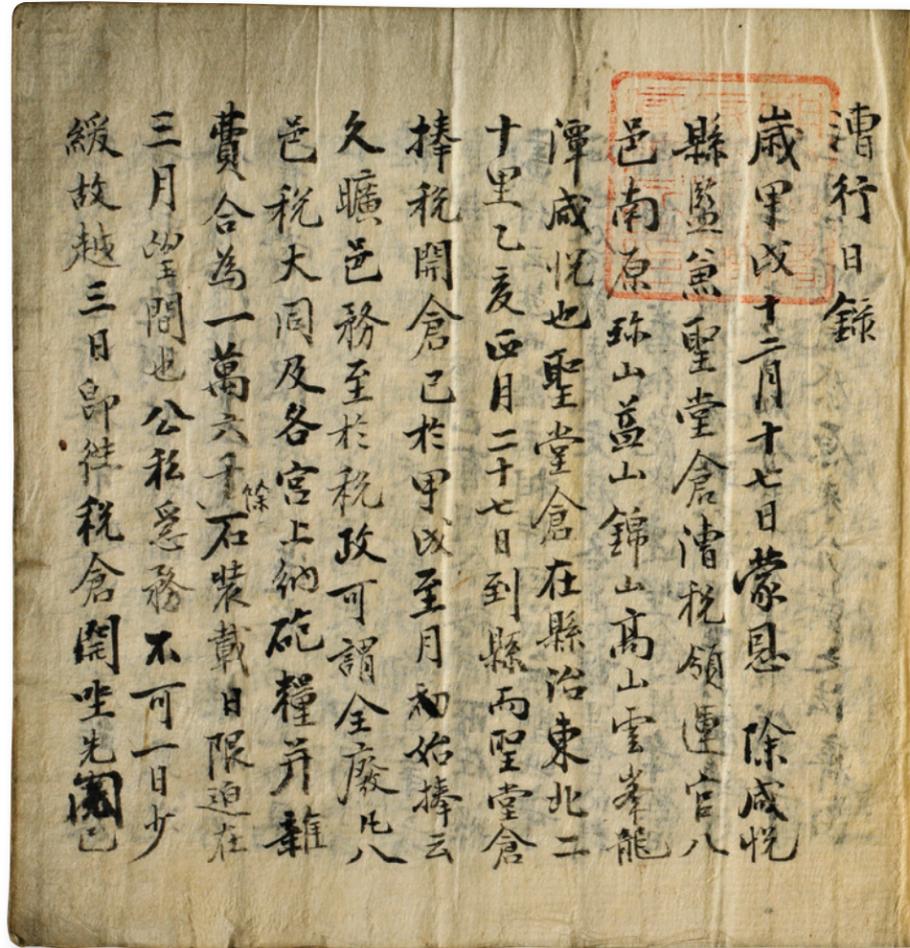
1875년(고종12)

발급자 : 조희백(趙熙百)

23 × 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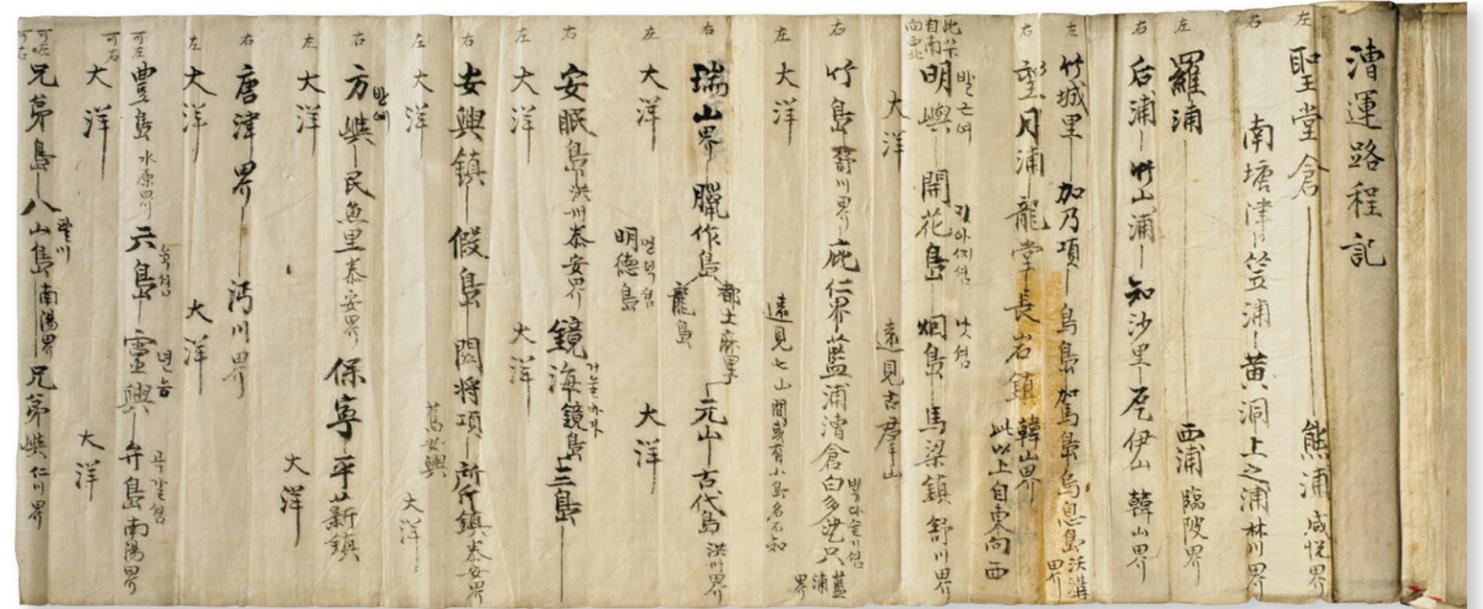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함열현감 겸 성당창 조세 영운관 (咸悅縣監兼聖堂倉租稅領運官)에 임명된 조희백(趙熙百)이 세곡의 운반 및 인수과정을 기록한 일지.



표지

조행일록(漕行日錄)은 1874년(甲戌年, 고종11) 12월 17일 함열현감 겸 성당창* 조세 영운관(咸悅縣監兼聖堂倉租稅領運官)에 임명된 조희백(趙熙百, 1825~1900)이 호남지역 8개 읍의 대동세(大同稅)와 각 궁(宮)에 바칠 세곡(稅穀) 1만 6천여 석(石)을 240여 명의 뱃사람을 동원하여 12척의 조운선(漕運船)에 싣고, 이듬해(1875, 乙亥年) 3월 23일 옹포(熊浦, 금강하구 지역의 포구)를 출발하여 4월 19일 서울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운반 및 인수인계과정을 기록한 항해기록(航海記錄)이다.



조운로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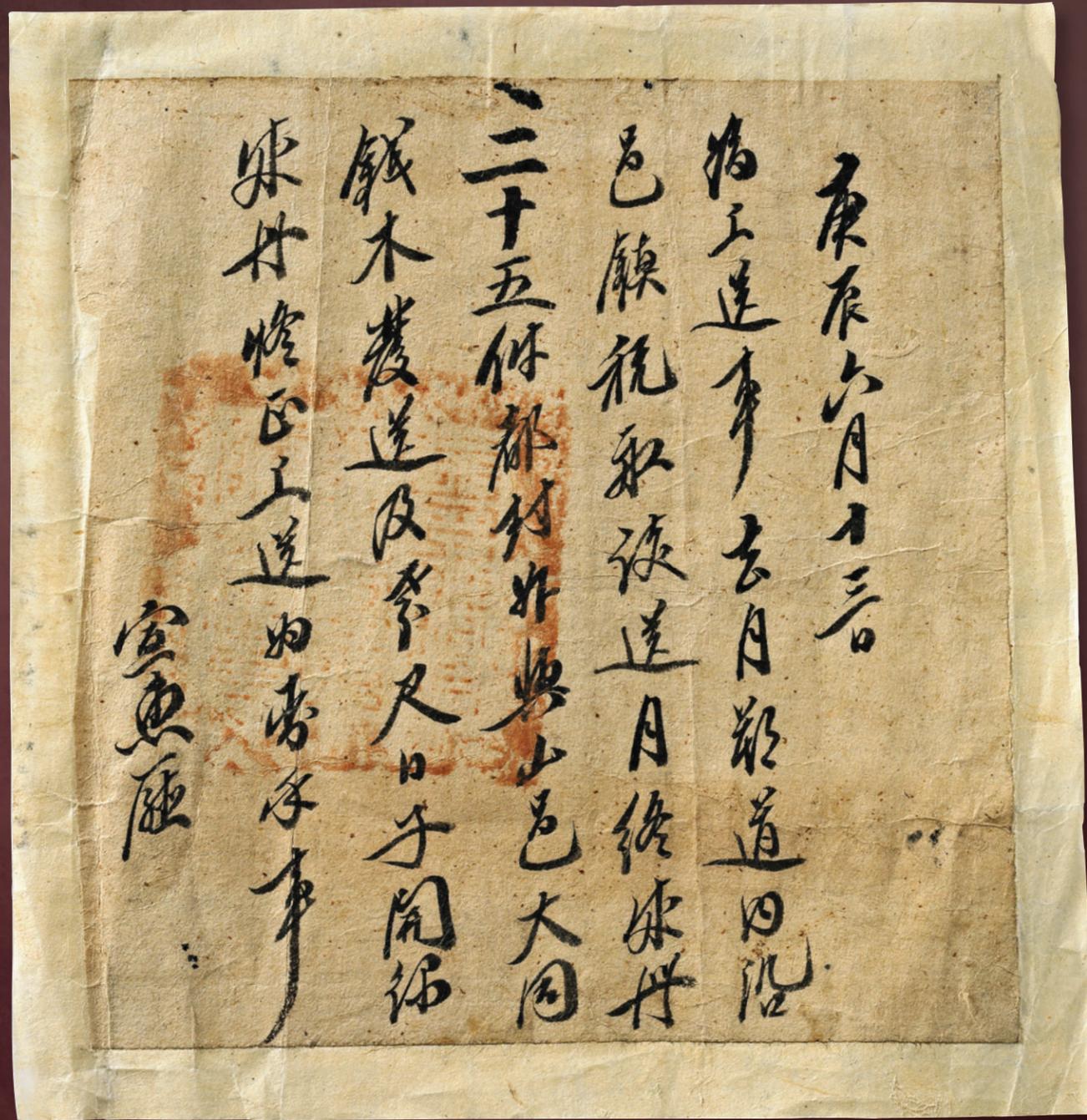
이 책은 조선시대 호남지역 세곡(稅穀)의 조운항로(漕運航路), 조창구조(漕倉構造) 및 조운작업(漕運作業)을 연구하는데 문헌적 가치가 있으며, 책의 뒤에 조운로정기(漕運路程記)가 붙어 있어서 간척사업으로 사라져버린 옛 서해안의 모양과 지명(地名), 그리고 경치를 음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성당창(聖堂倉) : 본래 덕성창(德成倉)이라 하였는데, 1428년(세종 10) 물길에 막혀 함열(咸悅)로 옮기고 난 후 성당창으로 고치고 전주·남원·함열 등 20개 고을의 세곡을 거둬들였다. 이후 여러 차례 장소·명칭이 변경되어 오다가 17세기 중엽부터는 함열의 진포(鎭浦)로 옮기고 다시 성당창이라 하면서 고산·운봉·익산·함열·진산·옹담·금산·남원 등 8개 고을의 세곡을 거두어 낚랐다.



날짜	날씨	정박지(지난 곳)	조운 및 항해 관련 사항	찾아온 이
1874.12.17~ 1875.3.14			함열현에 부임, 사흘 뒤 성당창에 나가 세곡을 점검함. 이후 50일 동안 현지에 머무	
3/15		성당	우선 성당창 소속 6척에 세곡을 싣기 시작, 전주 監營에 진척 보고	
3/20		성당	세곡이 다 준비되고, 격포에서 싣배 6척이 도착하여 적재(積載)시작	
3/21		성당, 옹포	짐 싣기를 끝내고 옹포(熊浦)로 가서 정박함	
3/22	비	함열, 옹포	함열에서 동생 등과 함께 곰재(곰라고개)를 넘어 옹포로 출발, 비가 내려서 선단의 출발을 늦춤	
3/23	맑음	옹포, 서포	순풍제를 올린 뒤 돛을 올리고 출발, 임천 호송리에게 과경장(過境狀)을 써서 보냄, 함께 승선한 조속(漕屬)을 낱날이 점검	
3/24	비, 바람	옹포	항해 못함	
3/25	맑음	서포, 장암진	아침을 먹은 후에 노를 저어 장암진에 도착, 공자선(貢字船)이 뒤에 처지고 곁꾼(格軍)이 실족사함, 용당제(龍堂祭)를 올림	韓山 호송리
3/26	맑음	장암진	貢字선이 따라와 합류하고 동생 일행이 환송차 옴	
3/27	맑음	장암진, 오식도앞 바다	동생들이 모두 되돌아가고, 선단은 금강 河口를 벗어, 밤에 항해를 하면서 해양제(海若祭)를 올림	
3/28	맑음	연도 앞바다	급청(及唱)이 개화도 파시(波市)에 대해서 이야기함, 고군산(古群山)까지 떠내려가다 노를 저어 연도(烟島) 앞바다에 이름, 밤에 조운에 즈음하여 첫 시를 지음	
3/29	맑음	마량진, 백다사리, 원산 앞 바다	지난밤에 2경부터 항해하여 마량진에 도착, 僉使의 點檢을 받음 호송을 게을리 한 서천(舒川) 아전을 배에서 벌함(남도 아전이 와서 벼루를 바침) 밀물이 들기를 기다리다 신기루를 봄[백다사리 詩], 납작도 앞에서 노를 저어 원산도 뒷바다에 이르러 漁火를 봄	馬良鎭은僉使 舒川 호송리 藍浦史, 洪州史
4/1	맑음	고대도	상륙하여 뒤쳐진 2배를 기다림, 원산 첨사의 현점(現點)을 받음	元山鎭 첨사
4/2	맑음	고대도, 안흥진, 소근진, 방어 앞	뒤늦게 도착한 포랑선(砲糧船)의 사공을 징벌함, 관장(關將)항을 통과하면서 제사를 드림[관장목詩] 소근진(所斤鎭) 앞바다에 정박하고 뒤쳐진 배를 기다림, 새벽에야 모든 배들이 다 도착함	安興鎭 監色
4/3	흐림	민어리 앞	질은 안개로 항로를 잃고 헤맨, 나팔 등으로 소리를 내어 선단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였으나 허사였음	

날짜	날씨	정박지(지난 곳)	조운 및 항해 관련 사항	찾아온 이
4/4	흐림	영흥도, 팔산도	조졸이 상륙하여 물을 길음, 오후에 밀물을 기다려 항해 노를 젓는, 조졸들에게 상금을 걸어 위로함	南洋 護校
4/5	흐림	팔산도, 영종도, 세어리	삼각산을 바라보고 기뻐함. 인천에서 나온 뱃길 안내인이 준치 두 마리를 가져와 바침, 오후에 상륙하여 숙소를 돌아본 뒤 갯벌에서 굴 캐는 어민들을 봄.	永宗 호교 仁川 船人 남양호교
4/6	맑음	세어리	모든 배들이 다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서울 各司와 전주 監營에 올리는 보고서와 편지를 씀	草芝鎭 첨사
4/7	맑음	황산, 손돌목, 연미정	손돌목을 지나기 위하여 이곳에서 밀물이 들기를 기다림, 연하를 거슬러 올라가며 좌우의 광성진과 문수산성을 바라봄, 燕尾亭에 상륙하여 주위를 굽어보고 시를 지음	富平호교 月串鎭 이방
4/8	맑음, 밤에 비	연미정, 절류정	밀물을 타고 한강으로 들어감, 수로가 좁아 밀물이 더 들기를 기다림, 밤에 소나기가 내림	
4/9	비	절류정	항해하지 못함, 광흥창과 함열에서 문서와 편지가 각각 도착함	
4/10	오후에 갬	절류정, 현암	얕은 여울이 많아 항해가 힘들, 함열에서 문안사가 옴, 밤에 서울과 함열에 보내는 편지를 씀, 샷대로 밀어 배를 운항함	
4/11	맑음	현암	동풍이 불고 비가 와 항해하지 못함	
4/12	비	현암	석동항을 건너기 위해 밀물을 기다림, 쪽배를 타고 나무로 건너가 술을 마시고 바람을 씬	高陽 호송선인
4/13	맑음	행주	동풍 때문에 노를 저어 신주에 닿음	陽川 史校, 座首[京邸史]
4/14	가랑비	염창목	바람과 조수가 여의찮아 항해하지 못함, 함열과 서울에서 편지가 옴	경저리
4/15	흐리다 갬	염창목	남풍이 세게 불어 항해 못함, 함열 편지가 왔으며 그 안에 임풍석(林楓石)의 시가 들어있었음	함열 문안사
4/16	흐림	염창목	한강 상류에서 밀려온 홍수로 인해 항해하지 못함, 배에서 내년 都沙工을 뽑음	
4/17	맑음	염창목	서풍을 빌어 잠시 항해하다가 바람이 그치고 얕은 여울이 많아 그대로 닳을 내림, 오후에 경저리(京邸史)가 술과 반찬을 가져옴	경저리
4/18	질은 안개 뒤 맑음	염창목, 광흥창	바람과 조수가 약해서 밧줄로 배를 끌어서 나아감, 함열을 떠난 지 25일만에 광흥창에 닿아 도백장(到泊狀)을 올림	
4/19	맑음	광흥창	예결 속배 뒤에 서강에서 호조판서의 점검을 받음	



이 문서에는 당시 5월 1일 전라도 도내의 연읍(沿邑)으로부터 거둔 진세(鎭稅, 각 도에 설치된 진영²⁾에서 지역별로 거둔 세금)를 실은 진세선(鎭稅船)을 호송하면서 작성한 각종 장부 25건과 산읍(山邑)에서 납부한 대동전목(大同錢木)의 발송 일자과 세금을 접수한 마감(考尺)³⁾ 일자를 비교·기록한 장부를 잘 정리하여 선혜청에 올려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측 중앙에 찍힌 관인의 인문(印文)은 '전라도관찰사지인(全羅道觀察使之印)'으로 보이며, 이 문서는 전라지역의 조세선박 호송, 관련 세금징수 장부 작성, 세금 징세기 소요기간 등을 정리하여 관찰사가 문서로써 선혜청에 보고한다는 요지를 적은 것이다.

특히 징세기 소요기간을 기록하는 것은 당시의 수세(收稅) 과정이 지체되어 예산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유도책으로 볼 수도 있겠다.

문서 말미에 기재된 '선혜청'은 당연히 전라도를 관할한 '호남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657년 효종 대에 선혜청 예하에서 호남지역에 대동법 시행을 담당한 호남청(湖南廳) 혹은 호남대동청(湖南大同廳)이 이미 설치 및 운영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대동미, 대동목, 대동전의 출납을 담당 하였던 중앙관청인 선혜청 예하에는 경기청(1608), 강원청(1624), 호서청(1652), 호남청(1657), 영남청(1677)이 설치되어 각 도의 대동법 시행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선혜청¹⁾ 상송문서

宣惠廳上送文書

03

경진년(庚辰年, 연대미상)

발급자 :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수취자 : 선혜청(宣惠廳)

22 × 21 cm

전라도관찰사가 경진년 6월 13일에
진세(鎭稅)와 대동전목(大同錢木)에 대한 사항을
성책(成冊)하여 선혜청(宣惠廳)에 보고하는 문서.

庚辰六月十三日

爲上送事 去月朔道內沿

邑鎮稅船護送月終成冊

二十五件都封州與山邑大同

錢木發送及考尺日子開錄

成冊修正上送爲啟事

宣惠廳

1) 선혜청(宣惠廳)은 조선시대 대동미(大同米)·대동포(大同布)·대동전(大同錢)의 출납을 관장한 관청을 말한다.

2) 진영(鎭營) : 총융청(總戎廳)·수어청(守禦廳)·진무영(鎭撫營) 및 각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의 관할에 속하는 각 병영(兵營)으로 각 도에 3내지 9개소의 진영을 두었음.

3) 여기서 '고척(考尺)'이라는 용어는 '자문(尺)을 상고(相考)하다' > '발급해 줄 자문과 조세대장을 비교해보다' > '세금을 징수하고 자문을 발급하다' > '세금징수와 자문발급을 마치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 고척을 기한내에 마치지 못한 수령들에 대해 독촉하는 기록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각읍이 세금을 납부차 발송한 일자와 세금을 접수한 고척일자를 기록 및 보고하는 것은 수령들에 대한 인사고과나 징세행정상의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세금영수증, 자문(尺文)

공평한 세금을 위한 노력



1.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잡세의 부과

조선시대의 조세는 주된 세목이 전세(田稅)로서 국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였지만, 재정수입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잡세(雜稅)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므로 이익이 많은데다가
세를 받지 않으면 백성들 중에는 본래 직업인
농업을 버리고 영리 행위에만 종사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또 농민에게는 세를 받으면서 영리하는 자에게 세를 안 받는다는 것은 가장 불공평한 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세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670년, 현종11)

유형원, 『반계수록(磻溪叢錄)』, 1670년(현종 11), 권지1 전제(田制) 상 잡설(雜說)

이는 조선시대의 경제정책이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민의 이탈을 방지하면서 농업 이외의 상업이나 공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전세와 공평하게 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잡세부과(雜稅賦課)의 목적과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잡세에 관한 규정은 성종조에 집대성된 『경국대전』의 호전(戶田) 잡세조(雜稅條)에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 관련 결세(結稅) 및 군역(軍役)·부역(賦役) 관련 대동·군역세를 제외한 중앙과 지방 관아에서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

이 잡세에는 해세(海稅)에 속하는 어세(漁稅)·염세(鹽稅), 공장세(工匠稅)에 속하는 장세(匠稅)와 은점세(銀店稅), 은(銀)산출지에 은점을 설치하고 세금을 징수, 상업세(商業稅)에 속하는 상세(商稅)·삼세(蔘稅, 인삼과 산삼을 세원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포삼세(包蔘稅, 홍삼을 세원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그리고 기타 무녀세(巫女稅)와 목물세(木物稅) 등이 있다.





아래의 표는 영조시대 문헌을 통하여 확인된 징수세액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국가 세입 중 전세와 잡세를 분석한 것이다. 전세의 경우 쌀로 환산하면 152,998석이며, 잡세는 쌀 26,615석이다. 따라서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 잡세는 전세의 17.4%로서 조세수입의 측면에서는 적은 비중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문헌에 의하여 확인하지 못한 잡세로서 상세(商稅)와 삼세(蔘稅)를 포함한다면 국가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세 목	징세액	연도
전세	쌀 103,062석(石) 전미(좁쌀) 6,770석(쌀 5,221석) 대두 104,313석(쌀 44,705석)	영조 45년(1769)
전세 소계	쌀 152,988석 (82.6%)	
잡세	해세(어염선세)	114,300兩(쌀 22,860석) 영조 7년(1731)
	장인세(공업세)	330필(疋)(쌀 165석) 영조 45년(1769)
	광업세(은점세)	15,248兩(쌀 3,050석) 영조 45년(1769)
	무녀세	2,700兩(쌀 540석) 영조 3년(1727)
잡세 소계	쌀 26,615석 (17.4%)	

출처: 『중보문헌비고』 제151권-전부고 11 공제 2 외

하지만, 잡세에 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잡세의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상이하고 통일성이 없어 잡세의 징수에 따른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잡세는 전세(田稅)와의 공평을 위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 원천과 과세대상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과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잡세의 과세목적이 조세의 기본기능인 재정수입 목적 이외에도 인적자원인 농민들이 농업에서 이탈하여 상업이나 공업에서 경제활동 하는 것을 억제하고, 무녀세(巫女稅)처럼 사회 현상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었다고 본다.

조선왕조가 전세 이외의 잡세를 과세하기 위한 체계적 조세제도도 통일된 과세대상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조선 후기 상업과 공업의 발달로 인한 국가 재정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오기수, 『조선시대 잡세에 관한 연구: 갑오개혁 이전까지』 『세무학연구』 제25권 제3호(2008년 9월)

무녀전 및 결역전 자문

巫女錢·結役錢 尺文

04

연대미상
발급자: 미상
수취자: 미상
25 × 12 cm

결역전(結役錢) 2냥 4전 8푼과
무녀전(巫女錢) 4냥 5전 2푼을 받고 작성한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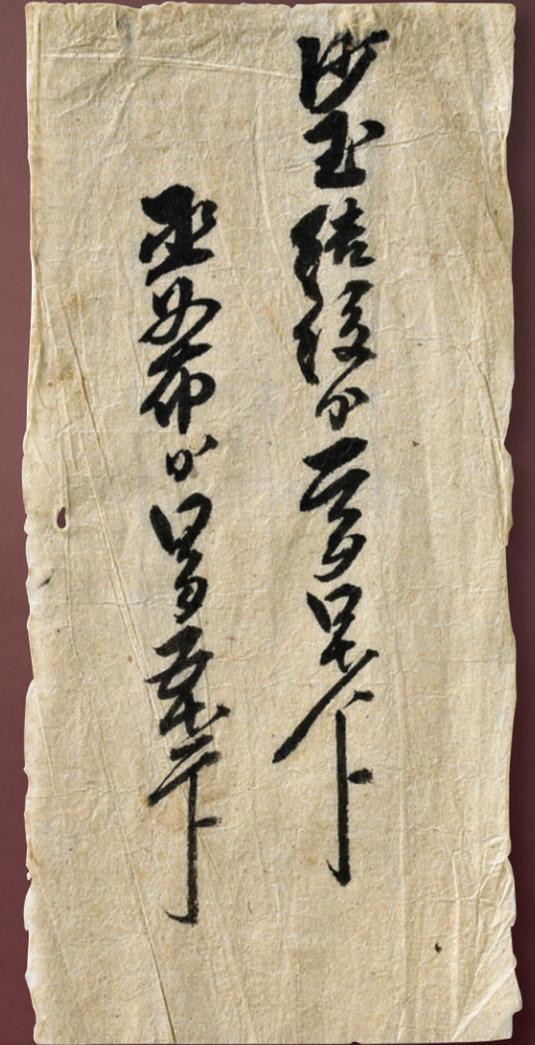
沙玉結役錢 二兩四錢八分
巫女布錢 四兩五錢二分

사옥도(沙玉島)의 ○○○가 결역전(結役錢)* 2냥 4전 8푼과 무녀전(巫女錢) 4냥 5전 2푼을 지급하고 작성한 자문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따르면, 무녀포(巫女布=巫稅)의 징수는 무당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무당의 악습을 규제하기 위해 무녀포(巫女布=巫稅)를 징수했다고 한다. 수결·관인이 빠져 있지만 약식형태의 자문이다.

“세 집만 사는 마을에도 무당이 하나씩 있어서
요사한 일을 만들고 현혹한 짓을 부채질하여 멋대로 화복(禍福)을 점쳐
남의 옷상자를 비게 하고 남의 쌀독을 비게 하면서,
그 자신은 비단만 입고 먹는 것은 생선과 젓갈을 먹으니
이들은 당연히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중략)
해마다 무녀포를 징수하여 그 악습을 벌준다면
아마도 무당의 풍습은 다소 뜸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목민심서(牧民心書)』 제6부 호전 6조(六條) 2)

* 결역전은 결전(結錢)과 역전(役錢)을 가리키는 것으로 토지세와 부역세를 함께 통칭한 것으로 보인다.



배·소금·해부세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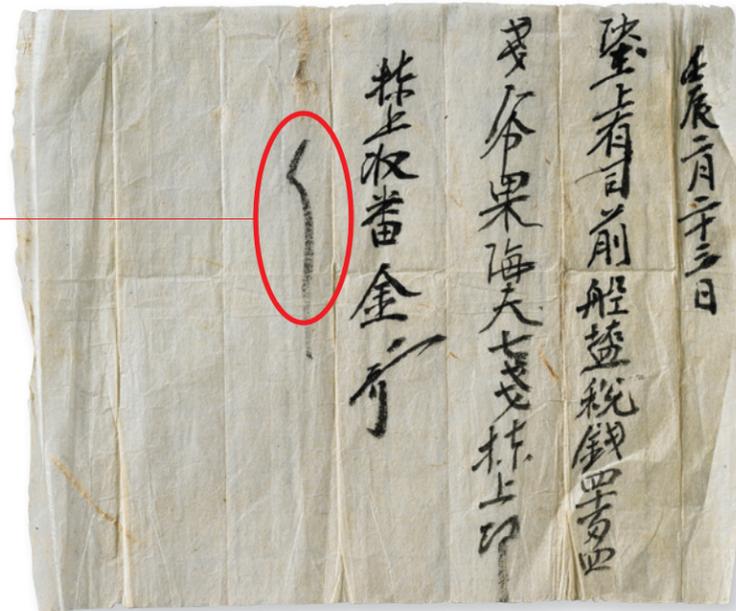
船·鹽·海夫稅尺文

05

1892년(壬辰年, 고종29)
발급자 : 봉상수번(捧上收番) 김(金)
수취자 : 미상
17.5 × 20.2cm

1892년(고종29) 2월 23일에 세전(稅錢)을 받고 발급해준 자문.

壬辰二月二十三日
沙玉上有司前船鹽稅錢四十兩四
錢八分果海夫七錢捧上印
捧上收番 金 (着名)



* 문서의 마지막을 표시하고 더이상의 부기(附記)를 방지함으로써 문서변조를 막았던 방식이 조선후기로 오면서 형해화(形骸化)되어 이런 아무런 의미없는 한 줄의 흘린 글씨로 변화한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지금도 간이 영수증에 이러한 표시를 하고 있으나 이는 일제시대의 표기법으로 우리 전통의 것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사옥도의 상유사(上有司)*로부터 사옥도에 소속된 배와 염전에 대한 세금 40냥 4전 8푼 그리고 해부세(海夫稅, 어부에 대한 세금) 7전을 받고 작성한 자문(尺文)이다.
내용 마지막에 봉상수번(捧上收番)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받지 않고 돌아가며 담당자를 정하여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미있는 점은 문서의 맨 끝(왼쪽 끝)에 길게 그은 선은 부(β)의 초서를 적은 것으로 지금의 ‘이하 여백’이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부호*이다.

이는 ‘인원물제(人原物際)의 원칙’에서 온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문서 상에서 사람의 명단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원(原)’자를, 물건의 목록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제(際)’자를 쓰는 원칙이 있었다. 이러한 원칙이 후기로 오면서 점점 형해화(形骸化)되면서 ‘제(際)’의 부수인 ‘β’의 초서 형태((또는 ㄱ)로 명단이나 물목 또는 문서내용의 마지막에 간략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 상유사(上有司) : 향교 서원 궁중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책임자

사옥도(沙玉島)란?

조세박물관 소장 자문(尺文) 중에는 사옥도(沙玉島)와 관련된 문서가 많다. 사옥도는 목포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6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이며 섬 대부분이 염전으로 이루어졌다. 섬 전체에 모래(沙)가 많이 있고 섬 가운데에는 옥(玉)이 나왔다 하여 사옥도(沙玉島)라 칭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정승인 제주 양씨가 조정의 비리에 분노, 비리척결을 외치다가 사옥도에 유배되면서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마다 뒷산에 당을 두어 신성한 지역이라 하여 그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혼자만이 정월 대보름날 3일 전부터 산의 샘(泉)에서 목욕한 후 당(堂)에 들어가 축제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전체 주민과 축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농악놀이 등을 하며 풍년농사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소금·무녀포 등 자문

元鹽釜稅·別鹽稅·巫女布尺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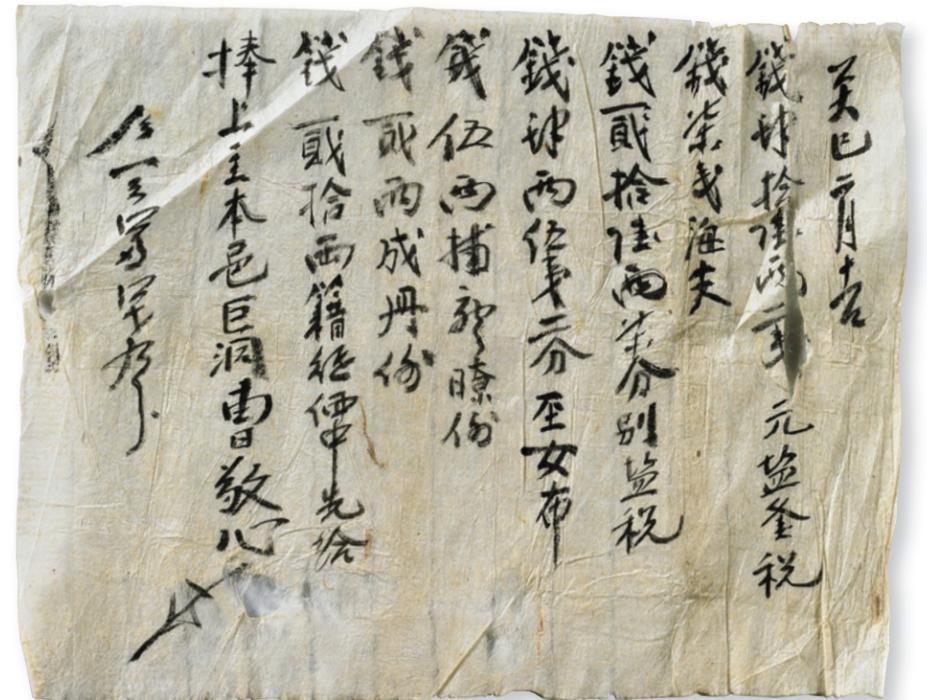
06

1893년(癸巳年, 고종30)
발급자 : 봉상주(捧上主) 조경심(曹敬心)
수취자 : 미상
17 × 22.5cm

조경심(曹敬心)이 1893년 2월 11일에 소금과 무녀포에 대한 세금을 받고 작성해준 자문.

癸巳 二月 十一日
錢 肆拾陸兩二錢 元鹽釜稅
錢 柒錢海夫
錢 貳拾陸兩柒分 別鹽稅
錢 肆兩伍錢二分 巫女布
錢 伍兩 捕廳曉例
錢 貳兩 成冊例
錢 貳拾兩 籍紙價中先給
捧上主 本邑 巨洞 曹敬心 (着名)
合 一百四兩四錢九分

이 문서는 본읍 거동에 사는 봉상주(捧上主, 세금을 징수하는 담당자) 조경심(曹敬心)이 1893년(고종30) 2월 11일에 소금과 무녀포에 관한 세금(원염부세 46냥 2전, 해부세 7전, 별염세 26냥 7분, 무녀포 45전 2분, 문서종이값 중 선급 20냥 등 합계 104냥 4전 9분)을 받고 작성해 준 자문이다.



2. 이중과세의 방지

물금칩

勿禁帖

07

1771년(辛卯年)

발급자 : 균역청(均役廳)

수취자 : 김천방(金天方)

27.5 × 16.8cm

1771년(辛卯年) 6월에 균역청에서 김천방에게 발급한 물금칩(勿禁帖).

(결락) 廳爲憑驗事 江華府下道面

(결락) 行商船主 金天方 官大津船 一隻

(결락) 卯年 稅錢 壹兩伍錢 捧上是去乎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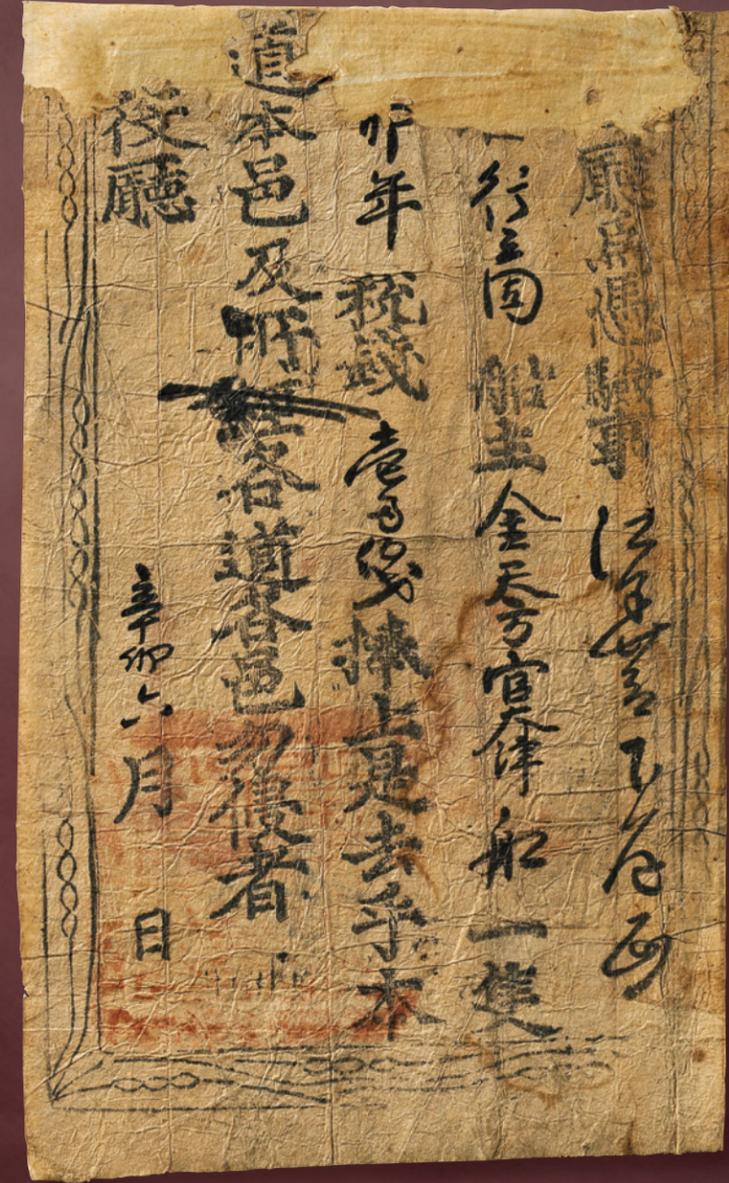
道本邑及所經各道各邑勿侵者

(均)役廳 辛卯六月 日

물금칩이란 해당 문서를 소지한 자의 특정한 권리나 행동을 침범하지 말라는 문서이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 상응하는 공전(公錢) 또는 세전(稅錢)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영수증(領收證) 즉 자문(尺文)의 역할도 함께 하는 문서이다.

본 물금칩은 균역청*에서 발급한 자문으로서 강화부(江華府) 하도면(下道面)의 행상선주 김천방(金天方)이 소유한 관대진선(官大津船) 1척(隻)에 대해 신묘년조의 세전(稅錢) 1냥 5전을 납부하였으니 거주하는 본도(本道) 및 본읍(本邑)은 물론 해당 선척이 경유하는 지역에서는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의무를 지우지 말라는 것으로, 지금의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문이다.

* 균역청이란 조선시대 영조26년(1750)에 균역의 부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실시한 균역법의 시행을 담당한 관청이다. 균역법은 균역을 면제받은 장정으로부터 무명 2필씩 받던 것을 1필로 줄이고, 모자라는 것은 어업세, 선박세, 결세 따위로 충당하면서 시행하였다.



조선시대 세금영수증, 자문(尺文) 자문 모음 尺文綴

조선시대 백성들 중에는 자문을 여러 장 모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제 강점기와 해방 무렵에는 세금 징수기관에서 일괄 모아둔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한다. 조세박물관 소장유물 중에는 한 사람이 대동세 등 세금을 같은 해의 여러 달에 걸쳐 납부하고 받은 자문 모음철과 한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전세(田稅)를 내고 받은 자문들을 점련(粘連, 서류를 덧붙임)하여 보관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전세 자문 모음 田稅尺文綴

08

1875~1894년

발급자: 감관(監官)

수취자: 황룡(黃龍)

남시전(南柿田: 감나무밭)을 경작하는 황룡(黃龍)이 낸 세금에 대한 자문(尺文).

남시전(南柿田)을 경작하는 황룡(黃龍)이 여러 해 동안 (1875~1894년)에 걸쳐 전세(田稅)를 납부하고 받은 6점의 자문을 모은 것이다. 이 자문에는 발급한 날짜와 세금을 납부한 내용이 적혀 있고,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의 관직과 수결이 왼쪽에 보인다. 한 사람이 장기간 낸 토지세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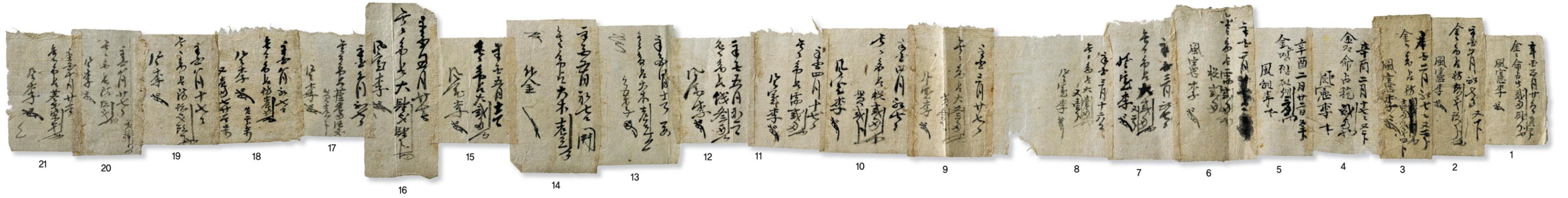


No	작성연대	규격(cm)	내용(正書)	납부사항
1	1875년 (乙亥年) 12월 19일	22×9.5	乙亥十二月十九日結尺 南柿田黃龍米四斗三刀 監官 (署押)	쌀 4말 3되
2	1876년 (丙子年) 2월 4일	20.5×13.1	丙子二月初四日大米尺 南柿田 中黃龍二十斗 至伊十斗 合米八斗一刀 監官 (署押)	쌀 8말 1되 (황룡과 돌이가 함께 납부)
3	1878년 (戊寅年) 12월 24일	20.5×13.9	戊寅十二月廿四日大米尺 南柿田黃龍米貳拾柒斗 砲米一斗二刀九合 監官 (署押)	쌀 27말과 포미(砲米) ¹⁾ 1말 2되 9홉

No	작성연대	규격(cm)	내용(正書)	납부사항
4	1881년 (辛巳年) 11월 16일	18.2×13.2	辛巳十一月十六日大米尺 南柿田黃龍米三十斗 砲米二斗三刀 監官 (署押)	쌀 30말과 포미 2말 3되
5	1891년 (辛卯年) 10월 28일	18.2×10.1	辛卯十月二十八日大米尺 南柿田黃龍米十八斗 監官 (署押)	쌀 18말
6	1894년 (甲午年) 11월 20일	23×10.5	甲午十一月二十日大米尺 南柿田黃龍米五十一斗四勺 砲米三斗七刀八合 監官 (署押)	51말 4작(勺) ²⁾ 과 포미 3말 7되 8홉

1) 포미(砲米) : 포량미(砲糧米)라고도 하며, 진무영(鎭撫營, 조선 후기 강화도에 설치된 군영)에 필요한 물자(物資)로 징수하는 세미(稅米)를 말한다.
2) 작(勺)은 1홉[승]의 1/10이며, 되[刀升]의 1/100.

발급자: 풍헌(風憲) 이(李)



대동세·삼세에 대한 자문 모음

大同稅 蓼稅 尺文綴

09

1861년(辛酉年, 철종12)
 작성자 : 풍헌(風憲) 이(李)
 수취자 : 김씨의 노(金奴) 명점(命占)
 14.7 × 126.3 cm (펼쳤을 경우 최대 크기)

풍헌(風憲) 이(李) 아무개가 김씨 성(姓)의 노 명점(命占)에게 발급한 21개의 영수증이 점련(粘連)되어있다.

전부 1861년(신유년) 2월 · 3월 · 4월 · 5월 · 8월 ·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대동세(大同稅) · 삼세(蓼稅) 등을 납부하고 풍헌* 이씨에게 받은 영수증을 일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특정 시기(1861년)에 납부한 세금의 내역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다만, 자문의 특성상 주고받는 사람 간에 서로 아는 사항은 간략하게 기록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작성자가 성(姓)씨 한글자만 적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감이 있다.

김씨댁의 노비인 명점(明占)이 풍헌 이씨에게 납부한 세금내역이 매우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거래행위에 직접 나서는 것을 체면상의 이유로 꺼렸기 때문에 종종 상진(上典)으로서 가노(家奴)에게 위임하여 거래행위를 대행하게 했다. 본 거래의 당사자 역시 양반인 김씨이며 노비 명점은 단순한 사자(使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방전(防錢)은 국방(國防)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지역 군영(軍營)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또 ‘수(需)’라고 간략하게 적었는데, 이는 ‘군수전(軍需錢)’을 말하는 것으로 군영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금전을 세금으로 받았다는 의미이며, ‘대(大)’는 대동세를 말하고 ‘대목(大木)’은 대동세조로 납부하는 무명베를 말한다. ‘삼(蓼) 또는 ‘삼전(蓼錢)’은 인삼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특히 ‘세(貰)’라고 하여 풍헌이 소유하였거나 또는 면(面) · 리(里) 등 공동체의 소유인 집이나 상점을 김씨댁 또는 노비 명점이 빌려서 사용하고 그 임차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 풍헌(風憲)은 조선시대 면(面)이나 이(里)에서 호적 · 수세(收稅)를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맡아 보는 직임을 말한다.

No	작성일자	내 용(正書)	납부사항
11	1861년 4월 17일	辛酉 四月 十七日 金奴命占 需 貳兩納 風憲 李(着名)	군수전(軍需錢) 2냥
12	1861년 5월 2일	辛酉 五月初二日 金奴命占 錢參兩納 風憲 李(着名)	세전(稅錢) 3냥
13	1861년 4월 12일	辛酉 四月 十二日 開 金奴命占 大木 壹匹納 官色 李(着名)	대동목(大同木) 1필
14	1861년 5월 7일	辛酉 五月初七日 開 金奴命占 大木 壹匹納 官代 金(着名)	대동목(大同木) 1필
15	1861년 5월 12일	辛酉 五月 十二日 金奴命占 大 貳兩納 風憲 李(着名)	대동세(大同稅) 2냥
16	1861년 5월 27일	辛酉 五月 廿七日 金奴命占 大 肆錢肆分納 風憲 李(着名)	대동세(大同稅) 4전4푼
17	1861년 6월 7일	辛酉 六月初七日 金奴命占 蓼 壹兩伍錢 貰壹分 風 李(着名)	삼세(蓼稅) 1냥5전 세(貰) 1푼
18	1861년 8월 7일	辛酉 八月初七日 金奴命占 防 壹兩納 風 李(着名) 貰二分未 又 壹兩七(月)廿二日条	방전(防錢) 1냥 집세(貰) 2푼 미납 1냥은 지난 7월 22일조
19	1861년 8월 17일	辛酉 八月 十七日 金奴命占 防 玖錢玖分納 風 李(着名)	방전(防錢) 9전9푼
20	1861년 8월 27일	貰參分 辛酉 八月 廿七日 金奴命占 防 玖錢納 風 李(着名)	방전(防錢) 9전 집세 3푼
21	1861년 10월 22일	辛酉 十月 廿二日 金奴命占 蓼 錢柒錢納 風 李(着名)	삼전(蓼錢) 7전

No	작성일자	내 용(正書)	납부사항
1	1861년(辛酉年) 1월 26일	辛酉 正月 廿六日 貰二分 金奴命占 防 貳兩肆分納 風憲 李(着名)	집세(貰) 2푼 방전(防錢) 2냥 4푼
2	1861년 2월 7일	辛酉 二月初七日 又一分 金奴命占 防 玖錢玖分納 風憲 李(着名)	방전(防錢) 9전 9푼
3	1861년 2월 10일	辛酉 二月初十日 又二分 金奴命占 防 壹兩參錢四分 風憲 李(着名)	방전(防錢) 1냥 3전 4푼
4	1861년 2월 17일	辛酉 二月 十七日 又二分 金奴命占 稅 貳兩納 風憲 李(着名)	세전(稅錢) 2냥
5	1861년 2월 22일	辛酉 二月 廿二日 又三分 金노명점 稅 二兩納 風헌 李(着名)	세전(稅錢) 2냥
6	1861년 2월	辛酉 二月 (결락) 金奴命占 需 貳兩納 稅 貳兩 風憲 李(着名)	군수전(軍需錢) 2냥 세전(稅錢) 2냥
7	1861년 3월 7일	辛酉 三月初七日 金奴命占 大 貳兩納 又二分 風憲 李(着名)	대동세(大同稅) 2냥
8	1861년 3월 16일	辛酉 三月 十六日 金奴命占 大 壹兩納 又壹分 風憲 李(着名)	대동세(大同稅) 1냥
9	1861년 3월 27일	辛酉 三月 廿七日 金奴命占 大 參兩納 貰參分 風憲 李(着名)	대동세(大同稅) 3냥
10	1861년 4월 7일	辛酉 四月初七日 金奴命占 稅 貳兩納 貰二分 風憲 李(着名)	세전(稅錢) 2냥 세(貰) 2푼

발급자 : 풍헌(風憲) 이(李)

조선시대 세금영수증, 자문(尺文) 특이 특이한 유형의 자문



북면산대* 둔전 자문

北面山垓屯田尺文

10

1873년(癸酉年, 고종10) 11월 10일

작성자 : 도소(都所) 홍씨

수취자 : 노 귀복(貴卜)

20 × 10.5 cm

북면산대의 노비 귀복(貴卜)의 둔전에 대한 세금 7냥을 받고 발급해 준 자문

北面山垓 奴貴卜 稅 柒兩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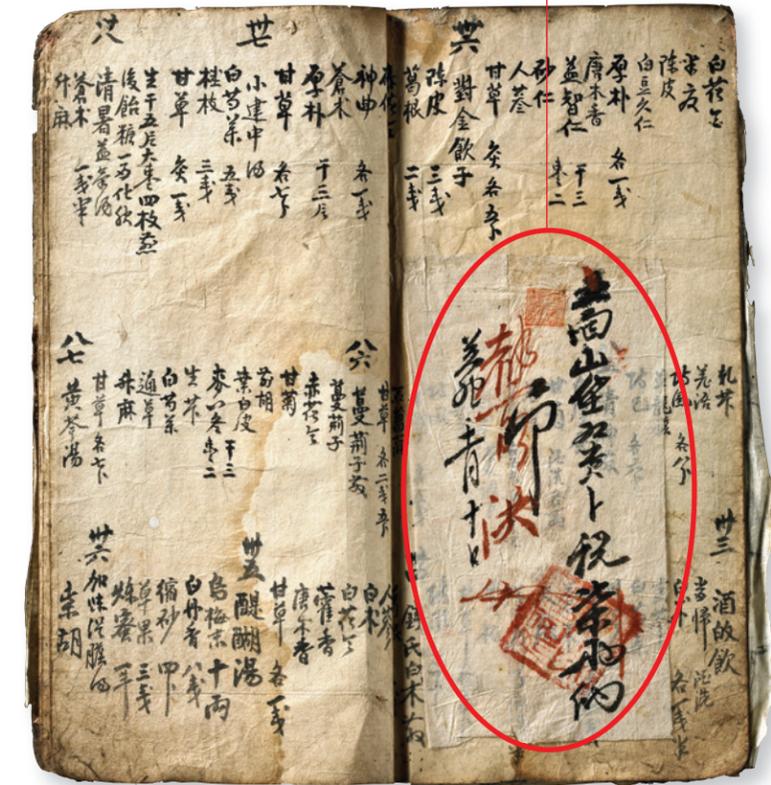
印

都所 洪 (着名)

癸卯十一月 十日

조세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성책고문서(成冊古文書)에는 북면산대(北面山垓)와 관련된 자문(尺文) 수 십 건이 산발적으로 붙여져 있다. 북면산대에는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둔전(屯田)*이 많았고 둔전에 대한 세금을 받고 발급한 이 자문에는 관노비와 농민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본 성책고문서(成冊古文書)가 한방의 광향정기산(藿香正氣散)부터 가미지패산(加味苳貝散)에 이르기까지 아흔다섯 가지의 산(散, 가루 약)과 탕(湯, 끓인 물 약)에 들어가는 재료와 양을 적은 책인데 반해 본 책지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자문을 산발적으로 붙여놓았다는 것이다.



〈성책고문서 위에 붙여진 자문〉

북면산대(北面山垓)란? 현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으로 속종 14년(1688) 지평군 하북면이라 칭하였다. 지평군의 북쪽에 위치하여 북면(北面)으로 불려오다가 1914년 단월면으로 불려 오늘에 이른다.

* 둔전(屯田)은 설치목적에 따라 국둔전(國屯田)과 관둔전(官屯田)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군수(軍需)를 확보하기 위해 군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공노비 또는 농민을 부려 경작하였고 후자는 지방관아의 재정 확보를 위해 관노비나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하였다.

세대전* 자문

稅代錢尺文

11

1893년(癸巳年, 고종30)

발급자 : 안승룡(安承龍)

수취자 : 미상

19.7 × 11cm

1893년(고종30) 9월 26일에 복군(卜軍, 짐을 나르는 일꾼) 안승룡(安承龍)이 사옥도(沙玉島)에서 세전(稅錢) 81냥 7전을 대신 받으면서 발급한 영수증.

癸巳 九月 二十六日

沙玉島稅代錢捌拾壹兩柒錢

負去印

卜軍 安承龍 (着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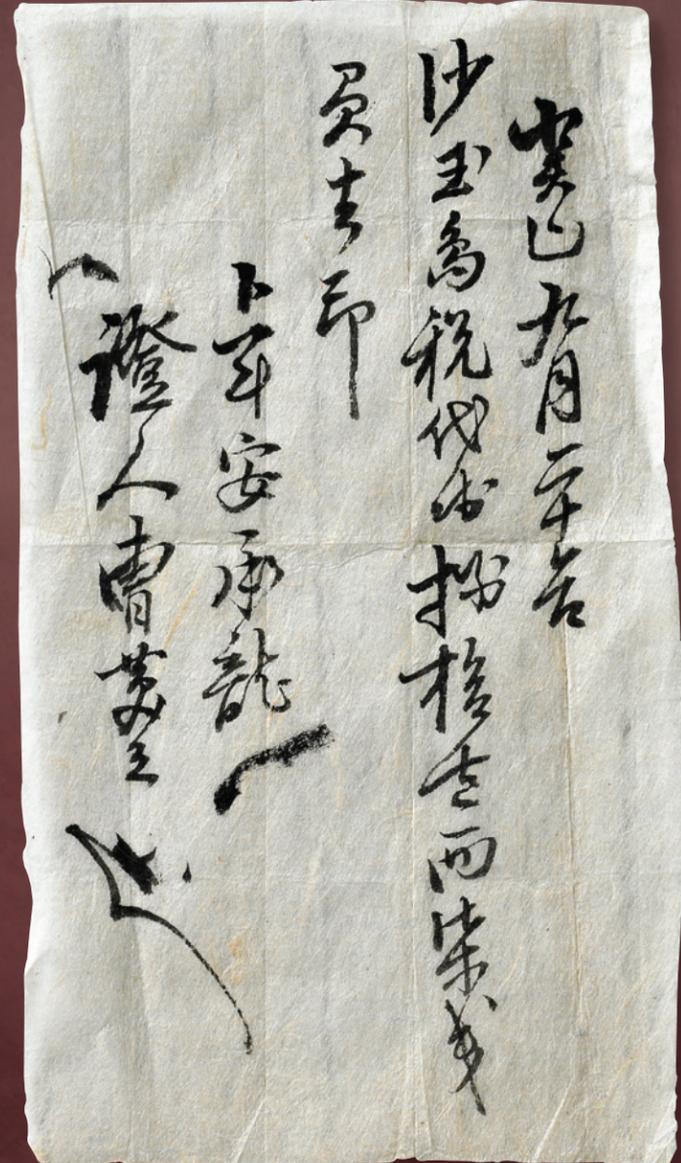
證人 曹慶三 (着名)

이 자문은 특이하게 증인의 이름(조정삼)과 수결까지 있는데 그 이유는 짐꾼에게 세전(稅錢)을 대신 납부함에 따른 증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과연 81냥은 어느정도이기에 짐꾼까지 필요하였을까? 1냥은 10전(錢)이고, 100푼(分)이다. 1푼이 엽전 1개이므로 81냥 7전은 엽전 8,170개이다. 이를 꾸러미로 엮는다면 지계에 가득 실어야 하는 매우 무거운 무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군(卜軍)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이를 ‘부거(負去) 즉 ‘지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타의 자문에서 볼 수 없는 복군이라는 짐꾼이 기록되어 세전(稅錢)을 운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매우 사실적이고 흥미로운 자문이라고 하겠다.

* 세대전(稅代錢)은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가 있는 자문(尺文)



이야기가 있는
자문(尺文)

경복궁 景福宮 중건



용 부적 용은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이며, 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화재를 막기 위한 염원에서 근정문 상량문에 함께 넣은 것으로 여겨진다. (2001 근정전 중수공사 때 발견)
- 사진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흥선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경복궁(景福宮) 중건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본궁(本宮)으로 1395년(태조 4)에 창건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소실(燒失)된 이후 270여년이 지나, 고종(高宗) 당시 섭정(攝政)하던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계획을 발표하고, 1865년에 영건도감(營建都監)을 설치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당시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으나 종친(宗親)과 일반 백성들에게서 원납전(願納錢)이라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공사 중 목재가 거의 다 타버리는 등 어려운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은 이를 강행하여 많은 무리가 뒤따랐다.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공공연히 벼슬자리를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였으며, 당백전(當百錢)을 발행하기 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1868년 드디어 경복궁이 중건되었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 조선 후기 1863년 철종이 승하하고 신정왕후(조대비)에 의해 고종이 즉위하자 고종의 아버지인 이하응이 대원군에 봉해지고 섭정을 펼쳤다. 당파를 초월한 인재등용, 서원철폐, 법률제도 확립으로 중앙 집권적 정치기강을 수립하였으나,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당백전 발행과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여 백성의 생활고가 가중 되기도 하였다.



근정전 중수공사 관계자명단 - 사진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흥선대원군

- 사진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경복궁 훼손

일제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를 경복궁 안에서 개최하면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18개소의 상품 진열관을 설치하였고, 전시회가 끝나자 경복궁 안에 궁궐 시설과 무관한 각종 석탑, 부도, 석등, 불상 등을 전국 각지에서 옮겨 배치하고 음악당을 설치하였다.

1917년 11월 10일, 창덕궁에 큰 화재가 나서 침전이 모두 불타버리자, 이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경복궁의 침전인 강녕전(康寧殿), 교태전(交泰殿), 함원전(含元殿), 경성전(慶成殿) 등을 1918년부터 1920년 사이에 헐어내어 창덕궁의 침전 복구공사 재목으로 썼다.

1918년부터는 왕권의 상징인 근정전, 사정전, 만춘전, 천추전을 유물 전시실로 이용하였고, 1916년부터 근정문 앞에 있던 흥례문과 영제교 등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926년에 완공하였다.



해방 이후 경복궁 복원사업

해방 이후 경복궁 내에 국립중앙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 후생관(현 국립고궁박물관), 제2별관(옛 문화재연구소) 등이 건립되고 서북쪽에는 군부대가 주둔하였다.

경복궁의 남정문인 광화문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문루가 타버리고 석축만 남아있던 것을 1968년에 원래 위치에다 콘크리트 구조로 복원하였으며, 조선총독부 청사는 1995년에서 1996년에 걸쳐 ‘일제의 잔재를 철거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으로 철거하였다.

1990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제1차 복원사업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정전(正殿)과 편전(便殿), 침전(寢殿), 동궁(東宮), 빈전(賓殿) 등 경복궁 중심축의 복원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1995년 강녕전 등 12동의 건물이 복원되었고, 1999년 자선당 등 18동의 건물이 세워졌다. 또 2001년 흥례문 등 6동의 건물이, 2005년에는 태원전 등 25동의 건물이 각각 복구됐다.

2010년 8월에 광화문과 건청궁 장안당 등 28동의 건물이 복원됐다. 이후 제2차 복원사업(문화재청 주관)에 따라 궐내각사와 동궁 권역 등을 중심으로 6개 권역에서 총 254동의 건물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복궁景福宮과 광화문光化門, 1868년 중건 당시 모습으로!

태조 4	선조 25	선조 · 광해군 · 숙종 ... 영조	고종 2	고종 5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광화문 복원	제1차 복원사업	제2차 복원사업	제2차 복원사업
1395년 9월	1592년	1606 · 1616 · 1617 ... 1772년	1865년	1868년	1910~1926년	1950~53년	1968년	1990년	2010년 8월	2011년부터~
경복궁 창건	임진왜란으로 소실(全燒)	복구 논의 (실천되지 못함)	홍선대원군 중건축수 (신정왕후가 수락)	중건완료	경복궁 훼손 및 조선총독부 건설	경복궁 남정문인 광화문 화재	광화문을 콘크리트로 복원	착공	제1차 복원사업 완료	진행(예정)

경복궁(景福宮) 대한민국 서울 세종로에 있는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으로서 1395년(태조 4년)에 창건하였다. '경복(景福)'은 시경에 나오는 말로 왕과 그 자손,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의 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는 의미이다.

광화문(光化門) 경복궁의 남정문(南正門)으로 섬세한 수법과 웅대한 구조 및 장려한 외관을 지닌 뛰어난 궐문(闕門)으로 평가되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소실되었고 홍선대원군 주도 하에 경복궁을 중건할 때(1865~8년) 광화문도 함께 중건되었다.



광화문의 역사(歷史)

1927년 조선총독부가 경복궁 동문인 건춘문(建春門) 북쪽으로 이전

일제 식민지 시기 공궐터를 가로막고 한국인의 민족정기를 막기 위해 근정전 남쪽 정면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으면서 광화문은 現 국립민속박물관 부근으로 강제로 옮겨짐
* 당시 200여동의 전각을 대부분 마음대로 헐고 전각 재목과 석축들을 민간인에게 팔거나 일본으로 반출해갔으며 경회루, 근정전 등 10여동만 남겨놓음

1950년대 한국전쟁(1950~53년)으로 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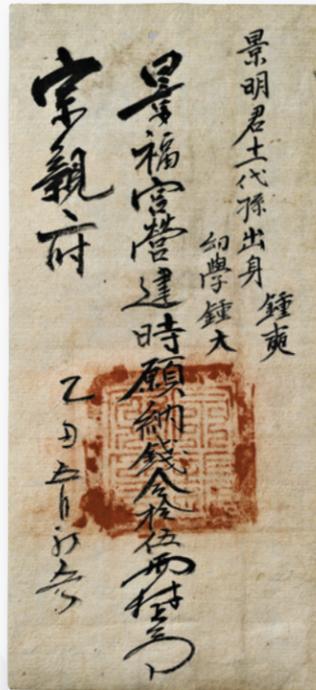
한국전쟁 때 복층 누각인 문루가 모두 불타 돌기둥만 남아있게 됨

1968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복원

콘크리트로 복원되며 당시 옛 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 축에 맞추면서 원래 위치를 벗어남 (현판-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인 한글로 바뀜)

2006년 12월 복원 및 이전 공사시작 후 2010년 8월 완공 및 시민에게 개방

관악산을 향하도록 원래 자리에, 원래 모습을 되찾아 시민에게 개방(2010. 8. 15)
(현판-1865~8년 중건 당시 훈연대장 임태영의 글씨로 복원함)



경복궁 원납전 자문

원납전(願納錢)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받아들인 기부금을 말한다. 1865년(고종 2)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수 계획을 수립하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계각층에 자진해서 돈을 기부하게 하였다. 즉, 경재(卿宰: 2품 이상의 관직자로 정승판서 등 재상을 일컬음) 이하로부터 지방 관리에 이르기까지 재력에 따라 납부하게 하고, 양반과 서민을 막론하고 원납하는 자에게 벼슬을 주었으며 이를 종친부(宗親府)에서 알려 왕실이 술선수범하도록 하였다. 천의현(千宜鉉)·하청일(河淸一)·장순규(張淳奎)·안석주(安石柱) 등이 대원군의 위임을 받아 원납전 연출(捻出: 어렵게 걷거나 모음)을 담당하여 착수 10여 개월 만에 468만 6,298냥(兩)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1866년 경복궁 중수공사장의 화재로 중수사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여 원납전만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만 냡을 기부하는 자는 상민이라도 벼슬을 주고, 10만 냡이면 수령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경복궁 중건 징수 총액(중건을 담당할 영건도감이 폐지된 1872년까지 징수액)
 → 백성(727만 7,780냥) + 왕실 종친(34만 913냥) = 총 761만 8,690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6년 이후 징수실적은 대단히 부진하였다. 이러한 실적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고, 문세(門稅)·결두전(結頭錢)을 징수하였으며, 당백전을 주조하여 국가경제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경복궁 중건을 담당할 영건도감이 폐지된 1872년까지의 징수 총액은 761만 8,690냥에 이르러 액수는 당시 재정 상태로 보아 놀라운 것이었다.

원납전은 명목상으로 강제 징수를 금했으나 실제로는 기부를 강요했고, 징수과정에서 각종 부정이 속출하여 많은 민폐를 유발했기 때문에 원망하며 납부한다는 뜻의 원납전(怨納錢)이라는 별칭도 있었다. 결국 홍시형(洪時衡)이 폐지론을 제기하여 1873년 폐지되었다.

당백전(當百錢)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1866년(고종 3)에 발행한 화폐이다. 이로 인해 물가상등과 체제위기를 초래하였으며 1868년 5월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로 통용이 금지되었다. 경복궁 중건을 위한 당백전 주조를 비롯하여 노동력의 강제 동원과 문세(門稅)·결두전(結頭錢) 징수 등은 국가경제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결두전(結頭錢)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한 비용이 원납전과 4대문의 통행세인 문세(門稅)까지 받아도 부족하므로, 1867년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전세(田稅)에 덧붙여 징수한 일종의 부가세로서 토지 1결(結)에 전(錢) 100문(文=푼)을 부가하여 거두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결(田結)의 세율을 인상한 것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당백전



당오전



경복궁 원납전 자문

景福宮願納錢尺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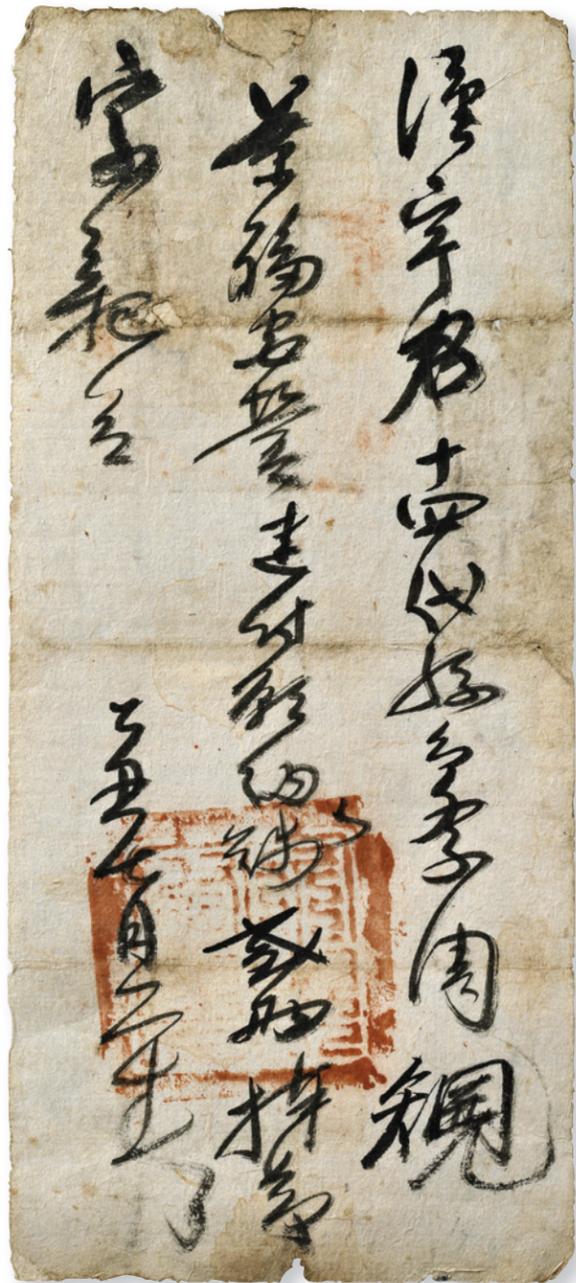
12
1865년(乙丑年, 고종2)
발급자 : 종친부(宗親府)
수취자 : 이주관(李周規)
36.5 × 16cm

1865년(乙丑年, 고종2) 7월 27일 경복궁(景福宮) 영건(營建) 시 원납전 2냥을 낸 이주관(李周規)에게 종친부에서 발급한 자문.

謹寧君十四代孫 幼孥 周規
景福宮營建時願納錢貳兩捧上印
宗親府 乙丑七月二十一日

본 자문에 나타난 근영군(謹寧君:1401~1461)은 조선 3대 태종(太宗)과 신빈 신씨의 세 번째 아들로서, 그 14대 손 이주관(李周規)이 경복궁 영건시 원납전 2냥을 내고 종친부*에서 발급받은 자문(尺文)이다.

* 종친부(宗親府) : 조선시대 종실제군(宗室諸君)에게 관직을 제공하고 이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한 관청.



경복궁 원납전 자문

景福宮願納錢尺文

13
1865년(乙丑年, 고종2)
발급자 : 종친부(宗親府)
수취자 : 이종석(李鍾奭), 이종대(李鍾大)
34.5 × 15.5cm

1865년(乙丑年, 고종2) 5월 초5일 경복궁(景福宮) 영건(營建) 시 원납전 15냥을 낸 이종석(李鍾奭), 이종대(李鍾大)에게 종친부에서 발급한 자문.

景明君十一代孫出身 鍾奭
幼學 鍾大
景福宮營建時願納錢合拾伍兩捧上印
宗親府 乙丑五月初五日

본 자문에 나타난 경명군(景明君:1489~1526)은 조선 9대 성종(成宗)과 숙의 홍씨 사이의 다섯 번째 아들로서, 그 11대손 이종석(李鍾奭)과 이종대(李鍾大)가 종친부에서 발급받은 자문(尺文)이다.



경복궁 원납전 자문

景福宮願納錢尺文

14

1865년(乙丑年, 고종2)
발급자 : 향청(鄉廳) 김(金)
수취자 : 김자안(金子安)
23.5 × 11.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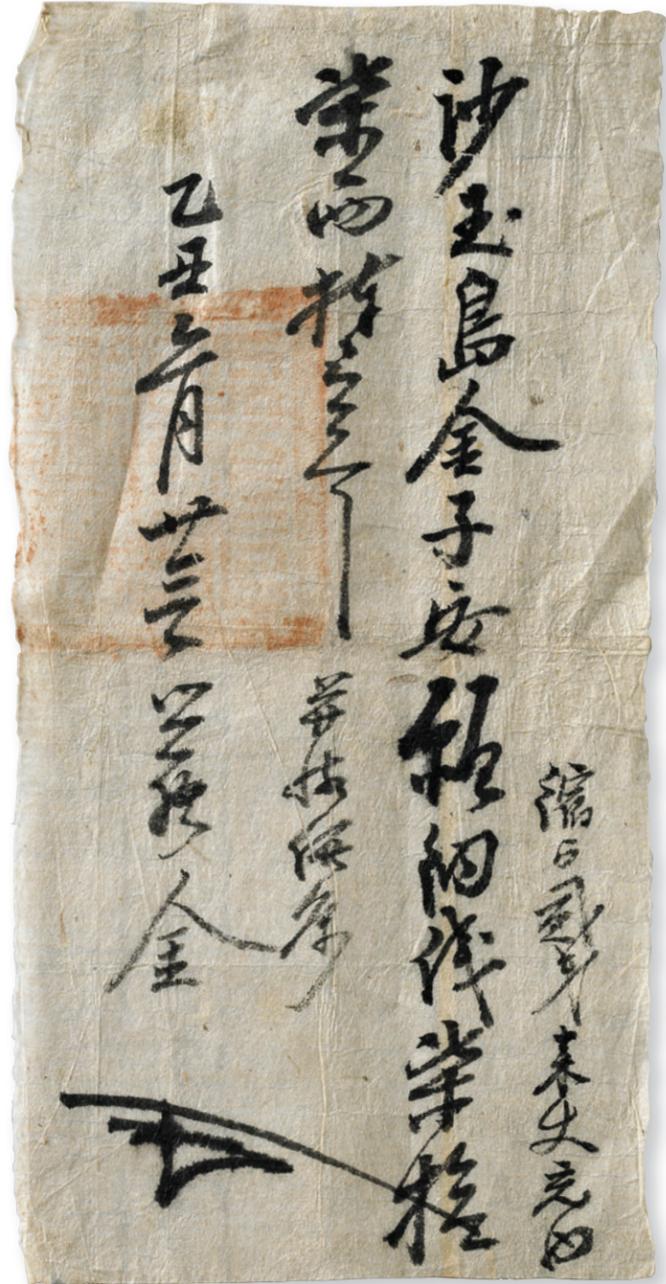
1865년(乙丑, 고종 2) 6월 23일에 원납전(願納錢) 77냥을 납부한 사옥도의 김자안(金子安)에게 향청(鄉廳)에서 발급해 준 자문.

縮錢貳菱來使充納
沙玉島金子安願納錢柒拾
柒兩捧上印 并結價条
乙丑六月廿三日 鄉廳 金 (署押)

본 자문은 경복궁 중건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섬 사옥도(沙玉島)까지 원납전을 징수하였고, 종친부가 아닌 향청(鄉廳)에서 이를 징수하고 발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건이다.

사옥도의 김자안이 바친 원납전 77냥은 종친부에 납부한 다른 원납전과 비교할 때 큰 액수로서 사옥도에 거주하는 다수인의 대표로 김자안이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며 ‘병결 가조(并結價条)’라고 쓰여 있어 결세(結稅)와 원납전을 함께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문(尺文)에는 향청의 주문방인(朱文方印) 1개가 찍혀 있고 담당 김씨의 수결(手決; Signature)이 있다.



결두전 자문

結頭錢尺文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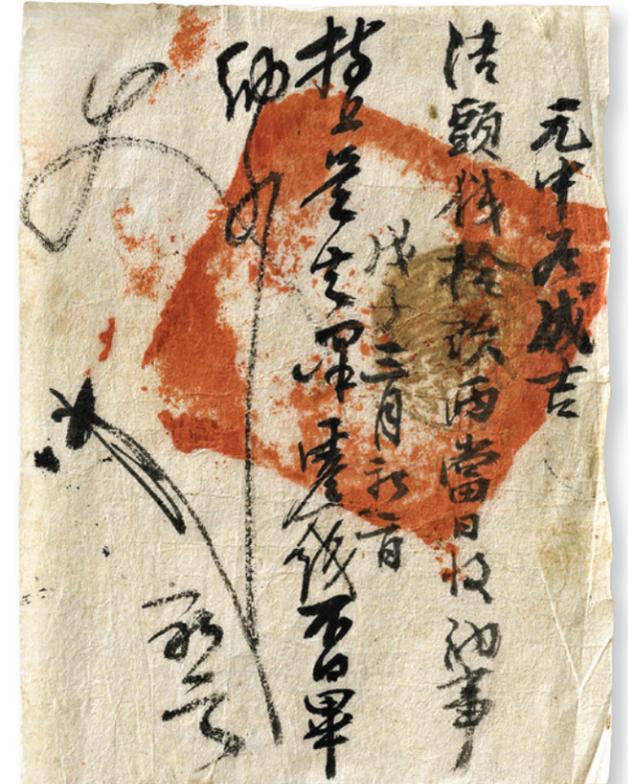
1888년(戊子年, 고종25) 3월 2일
발급자 : 목사(牧使) 또는 부사(府使)
수취자 : 성길(成吉)
15 × 11cm

1888년 원중곡(元中谷)에 사는 성길(成吉)이 결두전(結頭錢) 19냥을 납부하고 받은 자문(尺文).

元中谷 成吉
結頭錢拾玖兩當日收納事
戊子三月初二日
捧上是去果 零錢不日畢
納向事
初二日
使 (署押)

원중곡(元中谷)에 사는 성길(成吉)이 결두전*(結頭錢) 19냥을 당일 수납하였고,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곧 납부하라는 지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의 끝에는 사(使)의 수결(手決, Signature)이 있다.

이 자문을 자세히 보면 필체가 다른 두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줄부터 셋째줄까지(元中谷 成吉 結頭錢拾玖兩當日收納事 戊子三月初二日)는 해당 결두전을 성길으로부터 받은 풍헌(風憲) 또는 면임(面任)이 기록한 내용이고, 넷째줄부터 끝까지(捧上是去果 零錢不日畢 納向事 初二日)는 풍헌이나 면임으로부터 이 자문을 접수한 목사(牧使) 혹은 부사(府使)가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풍헌이나 면임이 성길로부터 받은 금액만큼(결두전 19냥) 기록하여 3월 초2일에 목사 혹은 부사에게 보고(전달)하였으나 그 금액은 원래 받을 금액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목사 혹은 부사가 ‘결두전 일부를 받았지만, 영전(零錢, 부족한 금액)은 하루빨리 납부하라’라는 지시를 기록한 후 내려준 자문으로 추정된다.

중앙에 황색으로 퇴색된 흑색 인문(印文)은 풍헌 또는 면임의 것이고, 주목방인(朱墨方印)은 목사 또는 부사의 것이다.

* 결두전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경복궁(景福宮)을 중건하는 데 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한 세금으로 원납전(願納錢)과 함께 백성의 원성을 크게 샀다.

상평통보 당백전과 상평통보 당오전

常平通寶當百錢

常平通寶當五錢

16

1865년(고종2)

지름 3.9cm

신한은행 한국금융사박물관 소장

1883년(고종20)

지름 3.2cm

1865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사업과 군비 확장 사업 등을 위한 재정문제를 일시적으로 타개하고자 발행한 당백전(當百錢)과 1883년 긴급한 국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오전(當五錢).



상평통보 당백전(常平通寶當百錢)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과 국방비 조달을 위해 호조 관할의 주전소에서 고종 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1만 6천냥을 주조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고액전(高額錢)으로 실제로는 종래 1문전(文錢, 2돈5푼) 상평 통보의 5~6배의 가치에 지나지 않는 것을 1백배로 고액화 시키자 물가가 6배까지 뛰어 자살 하는 가장이 속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사헌부 장령(掌令) 최익현(崔益鉉)의 '당백전을 통용시킨지 2년만에 사·농·공·상이 모두 병들게 되었다.'는 상소를 계기로 통용이 중단되었다.

그 후 1883년(고종20년) 긴급한 국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명성황후의 권세 속에 민씨 일파의 주도로 만들어진 악화가 상평통보 당오전(常平通寶當五錢)이다. 종전 상평통보 당이전(常平通寶當二錢)에 비해 5배의 명목가치를 부여했으나 실제 가치는 2배 정도이고 불량·조악한 동전이 많아 백성들에게 불신을 받았다.



상평통보(常平通寶)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만들었으며, 모양은 둥근 엽전으로 가운데에는 정사각형의 구멍을 뚫어 앞면에는 구멍을 둘러싸고 상하좌우에 '상평통보(常平通寶)'라는 글자를 한 자씩 찍었다. 뒷면의 구멍 위에는 주조한 관청의 이름(균均是 均역청(均役廳), 호戶는 호조(戶曹)를 말함)을, 아래에는 천자(千字)나 오행(五行)의 한 글자 혹은 숫자나 기호로 주조번호를 표시하였다.

“누구나 일상생활에 공평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를 뜻하며, 상시표준(常時標準)이란 말을 줄여 “항상 표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상(常)자는 ‘법(法)’이란 뜻이 있고, 평(平)자는 ‘표준’, ‘다스리다’, ‘고르게’ 등의 뜻이 있다.

조선조 인조 11년(1633년)부터 주조되기 시작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유통되어 오다가 숙종 4년(1678년) 국정 화폐로 발행되었고, 융희2년(1908년) 통용이 중단되기까지 우리나라 화폐 사상 270여 년의 가장 장기간 유통된 법정 화폐이다.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던 19세기 말 우리나라 최초의 고액화폐로 상평통보 당백전(常平通寶當百錢)과 상평통보 당오전(常平通寶當五錢)이 주조되어 유통되었으나 가치가 고액에 이르지 못하여 통용이 중단되었다.

이야기가 있는 자문(尺文)

신임관리 부임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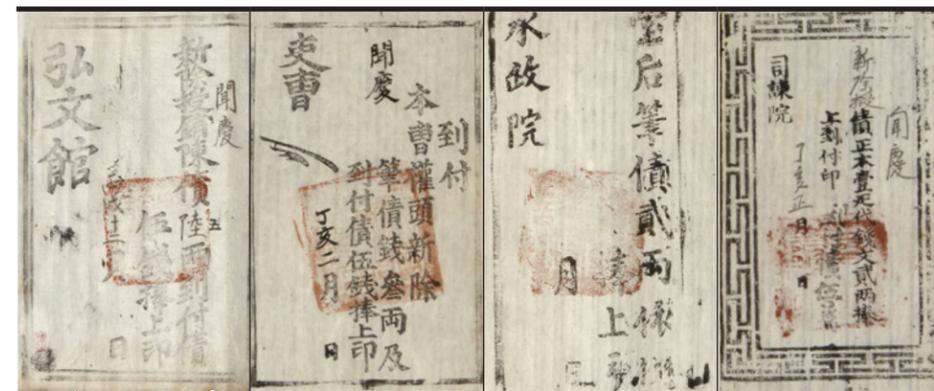
신임 관리가 낸 수수료

조선시대 후기에는 신임 관료가 되면 부임하기 전까지 중앙부서를 돌며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자 폐단으로 행해졌다.

이 수수료는 주로 새로 부임되는 곳에 바치는 예물 성격의 비용, 인수인계에 대한 비용, 문서 작성 및 어보를 찍는데 드는 수수료, 전 근무지에 내는 사례금 및 잡세 등이 있다.

조세박물관에는 조선시대 후기 신임 관리가 낸 수수료와 해당 영수증을 통해 그 시대의 정치와 사회상을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는 안창렬 자문(安昌烈尺文)이 소장되어 있다. 현존하는 자문 중에서는 드물게 무려 32개의 잡부금 총 175냥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14개 중앙 관서인 이조(8건), 내각(1건), 예문관(1건), 익위사(1건), 시강원(2건), 홍문관(2건), 평시서(1건), 사헌부(4건), 승정원(3건), 상서원(1건), 병조(1건), 통례원(2건), 의정부(1건), 사간원(4건)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았고, 해당 관서의 관인이 고스란히 찍혀있어 연구할 가치가 높은 유물로 평가된다.

〈조세박물관에 소장된 안창렬 자문의 일부본〉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연회비용과 수령증의 작성 비용 6냥(5냥) 5전	제수에 대한 문서작성 비용과 수령증의 작성 비용 3냥·5전	당후관에게 문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내는 비용 2냥	인사 발령 인준에 대한 비용 정목 1필(代鐵 2냥)
홍문관(弘文館)	이조(吏曹)	승정원(承政院)	사간원(司諫院)
1886년(丙戌年) 12월	1887년(丁亥年) 2월	미상	1887년(丁亥年) 정월

-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展 도록, 2009

조세박물관 소장 안창렬 자문(安昌烈尺文)에 나타난 수수료 내용

- **참알채(參謁債)**
새로 수령에 임명된 사람이 부임하기 전에 인사차 상관을 찾아볼 때 예물로 바치는 공식적인 비용 (관행상 열흘 이내에 납부)
- **고풍채(古風債)**
고풍에 따라 직속 상관에게 바치는 예물 성격의 잡부금. 새로이 수령에 임명된 자는 인사부서 수장(이조판서)에게 바치는 것이 관례
- **포진채(鋪陳債)**
이조의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연회비
- **해유질지(解由作紙)**
수령의 인수인계서인 해유문서의 작성에 필요한 종이 대금
- **필채(筆債)**
문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받는 돈 ('필묵값' 또는 '붓값')
- **평시서선생예목(平市署先生禮木)**
전에 몸담았던 부서에 내는 일종의 사례금
- **서경채(署經債)**
인사 서경의 댓가로 사헌부, 사간원에 납부하는 사례금
- **근장군사행하전(近仗軍士行下錢)**
의전을 맡은 군사들에게 쥐어주는 용돈
- **교지안보채(教旨安寶債)**
인사발령장인 교신에 어보를 찍는 수수료
- **숙배채(肅拜債)**
왕에게 사은숙배(謝恩肅拜)할 때 내는 수수료
- **도임채(到任債)**
임지에 도착하는 명분의 잡세



현감 부임시 발급받은 안창렬 자문

安昌烈尺文

17

1886~7년(고종23~4년)

발급자 : 이조 등 14개 중앙관서

수취자 : 안창렬

33 × 555.4cm(펼쳤을 경우 최대 크기)

1886년(고종23) 안창렬(安昌烈, 1847-1925)이 문경현감(聞慶縣監)에 새로 임명되면서 부과된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고 받은 자문(尺文).



조선시대에는 수령에 새로 임명되는 자에게 잡부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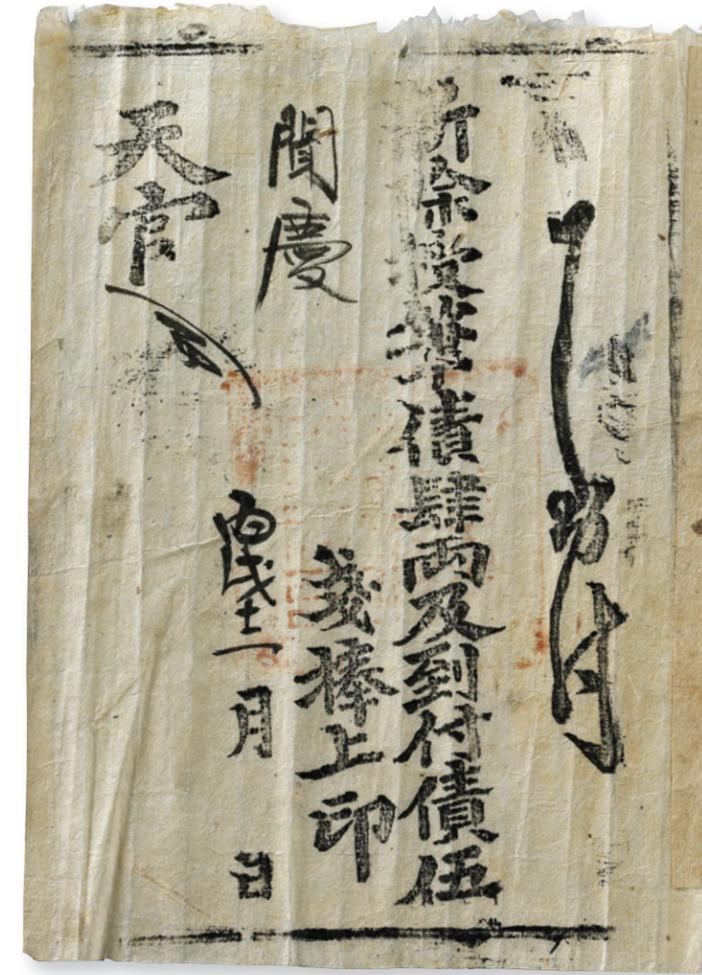
안창렬은 1886년 12월 문경현감(聞慶縣監) 임명에서부터 부임 직후인 1887년 정월까지 40일 동안 32개 명목으로 총 175냥(87필正)의 잡부금을 중앙관서에 납부했고 이를 순서대로 풀로 붙여(粘連) 보관하였다. 한지(韓紙)에 목판으로 인쇄되었고 영수의 표시로서 납부한 연월일과 납부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해당부서의 직인을 날인했다.

납부자는 '안창렬'이라는 이름 대신 '문경(聞慶)' 또는 '문경현감안(聞慶縣監安)'으로 표기하여 징세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특정직임(職任)에 있었음을 뜻했다.

32개 명목의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조, 내각[규장각], 예문관, 익위사, 시강원, 홍문관, 평시서, 사헌부, 승정원, 상서원, 병조, 통례원, 의정부, 사간원 등 14개 중앙 관서로부터 자문을 발급 받았다. 이들 자문에는 해당 관청에서 찍은 관인이 각각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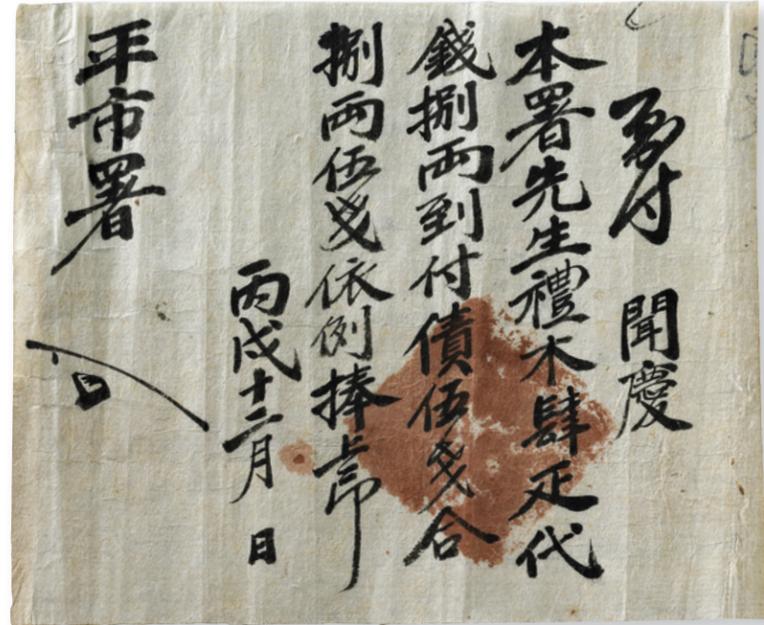
<p>聞慶 肅拜債錢文肆兩伍錢依例 捧上到付印 丁亥正月 日 通禮院</p>	<p>聞慶 到付 教旨安 實債伍(지우고 肆라고 씀) 兩及到付債伍錢 依例捧上印 丁亥正月 日 尙瑞院</p>	<p>到付 聞慶 廟堂新定式近仗軍士行下錢肆兩 卽捧上印 丁亥正月 日 兵曹 (署押)</p>	<p>聞慶 三三 新 除授筆債兩到付債伍錢 捧上到付印 丙戌十二月 日 藝文館</p>
<p>왕에게 사은숙배(謝恩肅拜)할 때 내는 수수료 숙배채(肅拜債) (숙배를 위해서 의전을 익힐 때 담당하는 부서: 통례원)</p>	<p>인사발령장에 어보를 찍는 수수료 안보채(教旨安實債) · 자문발급 수수료 도부채(到付債) (어보를 관리하는 부서: 상서원)</p>	<p>의전을 맡은 군사들에게 주는 용돈 근장군사행하전(近仗軍士行下錢) 신정식(新定式)*</p>	<p>문서 작성해주는 값 필채(新除授筆債) · 자문발급 수수료 도부채(到付債)</p>
<p>4냥 5전</p>	<p>안보채 4냥 / 도부채 5전</p>	<p>4냥</p>	<p>필채 6냥 / 도부채 5전</p>
<p>통례원(通禮院)¹⁾</p>	<p>상서원(尙瑞院)²⁾</p>	<p>병조(兵曹)³⁾</p>	<p>예문관(藝文館)⁴⁾</p>
<p>1887년(丁亥年) 正月</p>	<p>1887년(丁亥年) 正月</p>	<p>1887년(丁亥年) 正月</p>	<p>1886년(丙戌年) 十二月</p>



<p>到付 新除授筆債肆兩及到付債伍 錢捧上印</p>
<p>聞慶 丙戌十二月 日 天官 (署押)</p>
<p>문서 작성해주는 값 필채(新除授筆債) · 자문발급 수수료 도부채(到付債)</p>
<p>필채 4냥 / 도부채 5전</p>
<p>천관(天官)(吏曹)⁵⁾</p>
<p>1886년(丙戌年) 十二月</p>

* 신정식(新定式) : 여기서는 묘당(廟堂, 의정부의 異稱)에서 올해 예하 관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각종 예목전(禮木錢) 및 부과금의 과목(科目)을 배정해 준 것을 말하며, 병조 및 통례원 등 해당관청이 의정부에서 정해진 배정분 가운데서 징수한다는 의미로 기재한 함축적 용어로 보인다. 의정부에서는 매년 예하 관리들이 외관직으로 임명되어 나가는 경우 또는 연례적으로 사용되는 행정문서 등의 생성시 그 각종 절차에다 예목(禮木), 필채(筆債) 등의 금원의 수납에 있어 폐단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연초에 배정해주고 이외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규정된 금액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삼척부각사행하예목신정절목(三陟府各司行下禮木新定節目)』의 「의정부관사(議政府關辭)」 참조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 통례원(通禮院) : 조선시대 조회(朝會)와 제사에 관한 의식을 맡아보던 관아
2) 상서원(尙瑞院) : 조선시대 옥새와 옥보(玉寶) · 부패(符牌)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3) 병조[兵曹] : 조선시대 육조(六曹) 가운데 군사와 우역(郵驛·역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4) 예문관[藝文館] : 조선시대 사명(辭命·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짓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5) 천관[天官] : 조선시대 이조(吏曹)를 달리 이르던 말(異稱)



到付 聞慶 本署先生禮木肆代 錢捌兩到付債伍錢合 捌兩伍錢依例捧上印 丙戌十二月 日 平市署 (署押)	안창렬이 전에 몸담았던 부서인 평시서에 내는 일종의 사례금 본서선생예목(本署先生禮木)과 자문발급 수수료 도부채(到付債)
예목 4필(代錢 8냥) / 도부채 5전	
평시서(平市署) ⁶⁾	
1886년(丙戌年) 十二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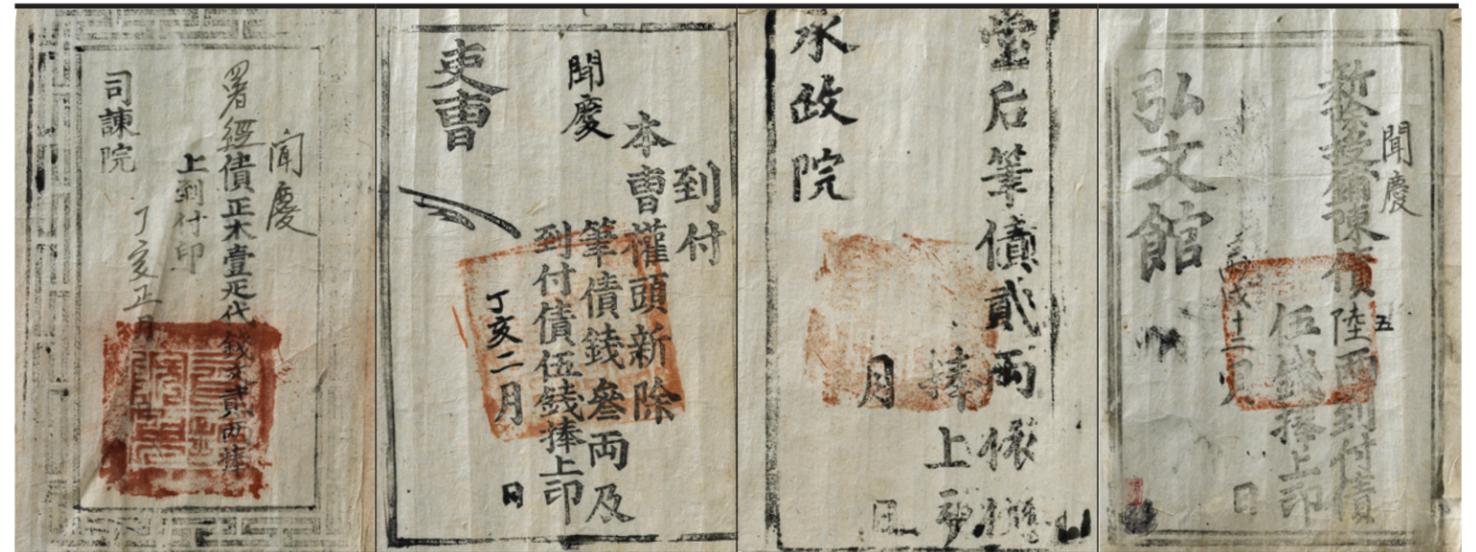
6) 평시서[平市署] : 조선시대 시전(市廛:조선시대 도시의 상설 점포)의 물가관리, 상행위 감독, 도량형 감독 등의 일을 맡아 보던 관아

7) 사간원[司諫院] : 조선시대 간쟁(諫諍: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함)과 논박을 담당하던 관청

8) 이조(吏曹) : 조선시대 육조(六曹) 가운데 문관(文官)의 임명 및 등용시험을 관장하고 관리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공이 있는 인사에 대한 훈봉(勳封)·봉작(封爵) 등을 담당하던 관아

9) 승정원[承政院] :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

10) 홍문관[弘文館] : 조선시대 삼사(三司) 가운데 궁중의 경서(經書:임금에게 서류를 올릴 때 어느 관청을 거쳐 갈 것인가를 동의하는 서명을 함), 문서 따위를 관리하고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聞慶 署經債正木壹疋代錢文貳兩捧 上到付印 丁亥正月 日 司諫院	到付 本曹權頭新除 聞慶 筆債錢參兩及 到付債伍錢捧上印 丁亥二月 日 吏曹 (署押)	堂后筆債貳兩依例 捧上印 月 日 承政院	聞慶 新除授鋪陳債陸(五)兩到付債 伍錢捧上印 丙戌十二月 日 弘文館
인사 발령 인준의 대가로 납부하는 사례금 서경채(署經債)	문경현감 임명으로 홍문관에 지급하는 문서 작성해주는 값 필채(新除授筆債) · 자문발급 수수료 도부채(到付債)	승정원의 주서(注書: 실록의 원고인 사초를 쓰는 일을 하던 정7품)의 붓글씨 값(堂后筆債)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연회비인 포진채(新除授鋪陳債) 자문 발급 수수료 도부채(到付債)
정목1필(代錢 2냥)	필채 3냥 / 도부채 5전	2냥	필채 5냥 / 도부채 5전
사간원(司諫院) ⁷⁾	이조(吏曹) ⁸⁾	승정원(承政院) ⁹⁾	홍문관(弘文館) ¹⁰⁾
1887년(丁亥年) 正月	1887년(丁亥年) 二月	연도 미상	1886년(丙戌年) 十二月

예목¹⁾·도부채²⁾ 자문

禮木·到付債尺文

18
1826년(丙戌年, 순조26)
발급자 : 병조(兵曹)
수취자 : 남포현감(藍浦縣監) 송(宋)
20.8 × 17cm

1826년(순조 26) 남포현감에 임명된 송(宋)아무개가 예목 2필 값의 돈 4냥과 도부채(到付債) 5전을 병조에 납부하고 받은 자문(尺文).

到付 藍浦縣監 宋
兵曹例納 禮木貳疋代錢肆兩及到付債伍
堂下軍職例 莖依例捧上印
丙戌十月 日
兵曹 (署押)

본 자문은 남포³⁾ 현감으로 새로 부임한 송(宋)아무개가 신임관이 선배들에 의해 치르는 일종의 신고식인 면신례(免新禮)⁴⁾의 성격으로서, 도임(到任, 인물을 선택하여 어떤 자리를 맡기는 것을 말함)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 영수증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시대에 관원의 임명과 체직(遞職, 정해진 임기가 차서 그 벼슬을 해임함)이 빈번하여 자연스럽게 신임관의 수수료 예납(例納, 전례에 따라 납부) 역시 빈번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관직에 대한 폐습의 일면을 읽을 수 있는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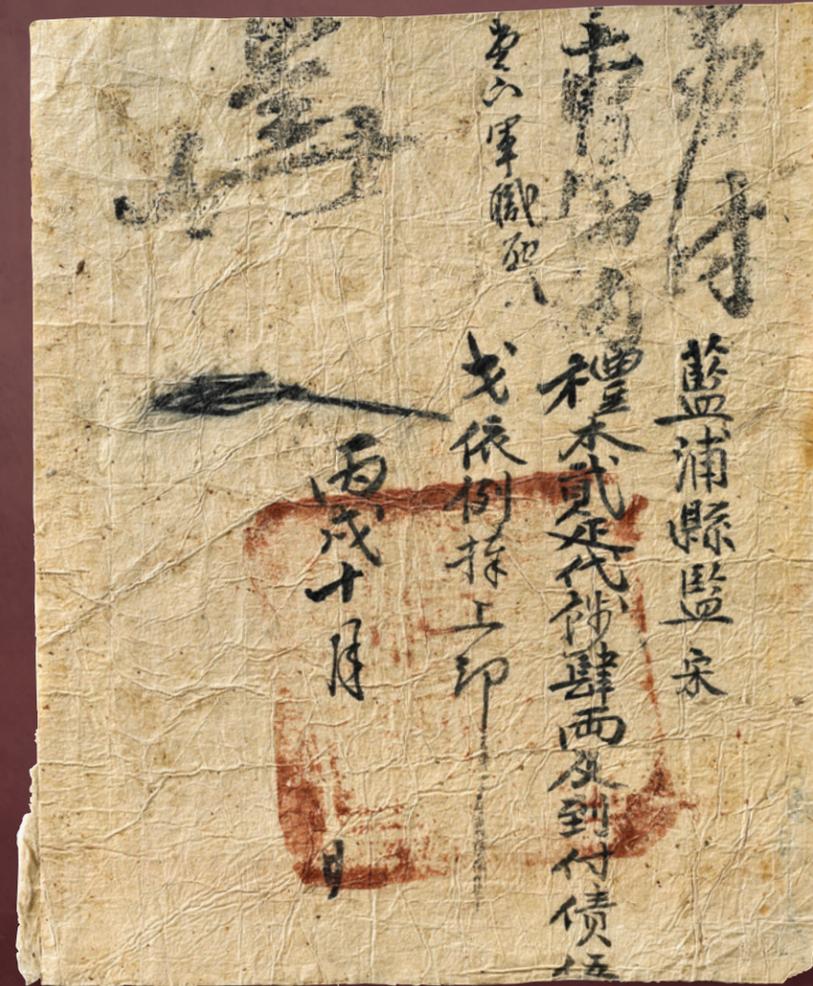
문서의 상단이 잘려나가 보이지 않지만, “到付/ 兵曹例納 /兵曹”의 문자가 목판이나 도장의 형태로 새겨져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 예목(禮木): 예전(禮錢) 또는 예목전(禮木錢)으로 불리어지는 할당금 형식의 찬조금으로서 이는 부사(府使)·유수(留守)·감목관(監牧官)·만호(萬戶) 등 외임직(外任職)에 부임할 때 예의상으로 내는 돈이나 무명을 말함

2) 도부채(到付債): 원래는 새로 임명된 수령·진장(鎭將) 등이 부임한 뒤 의정부·이조·병조에 의례적으로 바친 사례금품을 뜻하나, 주로 자문발급 수수료조로 납부하였음

3) 남포(藍浦): 충청남도 보령지역의 옛 지명이다.

4) 면신례(免新禮): 조선 시대 신참 관원이 선배 관원들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의식으로 대개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성대하게 대접함



안보채·도부채 자문

安寶債·到付債尺文

19

1827년(丁亥年, 순조27)
발급자 : 상서원(尙瑞院)
수취자 : 이천(伊川, 지명으로 추정) ○○○
27 × 17.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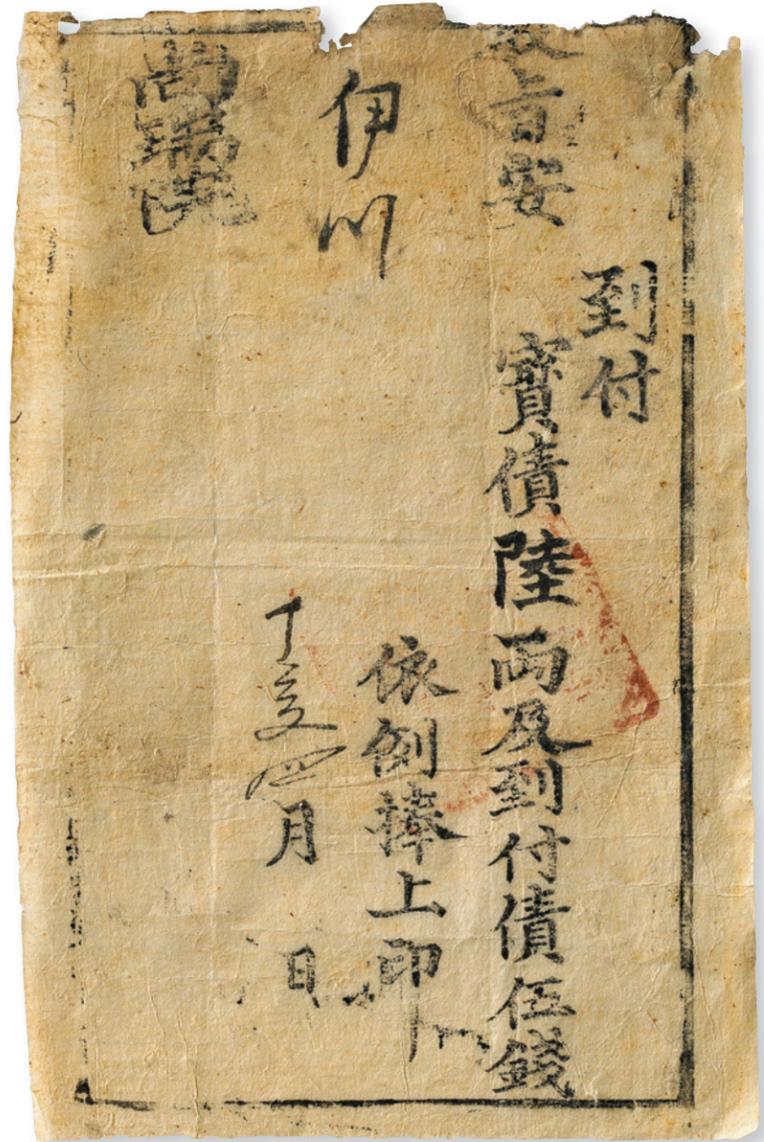
1827년(丁亥年) 4월 상서원(尙瑞院)이 새로 임명된 관원에게 안보채(安寶債)와 도부채(到付債)를 받고 발급해준 자문(尺文).

到付
(教)旨安 寶債陸兩及到付債五錢
伊川 依例捧上印
丁亥 四月 日
尙瑞院

본 자문은 새로 임명된 관원이 안보채(安寶債) 6냥(兩)과 자문 발급 수수료인 도부채(到付債) 5전(錢)을 납부하고 상서원(尙瑞院)*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문이다.

안보채(安寶債)는 상서원(尙瑞院)에서 교지에 옥새(玉璽)를 찍은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상서원(尙瑞院)은 조선시대에 옥새(玉璽), 부패(符牌) 등을 맡아보던 관아로서, 1894년(고종 31)까지 존속하였다.



필채·도부채 자문

筆債·到付債尺文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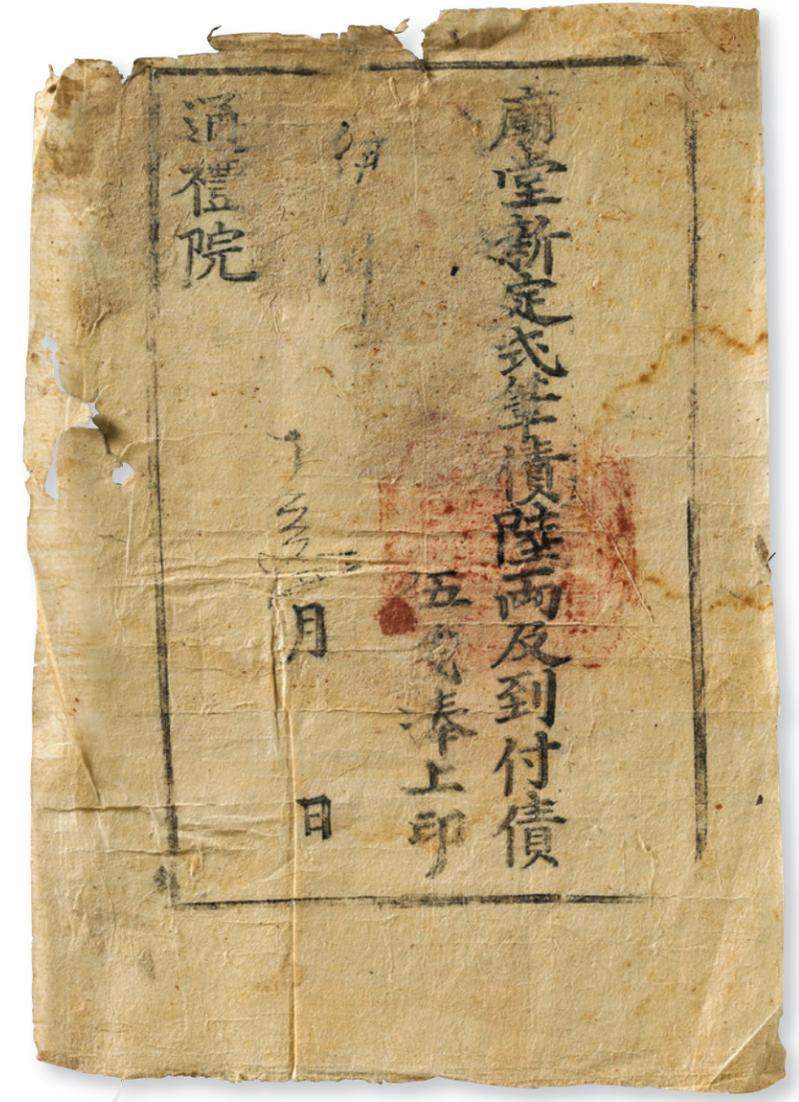
1827년(丁亥年, 순조27)
발급자 : 통례원(通禮院)
수취자 : 이천(伊川, 지명으로 추정) ○○○
29 × 20 cm

1827년(丁亥年) 4월 통례원(通禮院)이 새로 임명된 관원에게 필채(筆債)와 도부채(到付債)를 받고 발급해준 자문(尺文).

廟堂新定式筆債陸兩及到付債
五錢捧上印
伊川
丁亥 四月 日
通禮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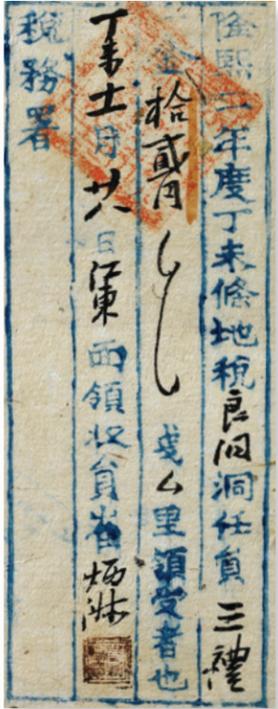
본 자문은 새로 임명된 관원 아무개로부터 묘당(廟堂, 의정부의 異稱)에서 새로이 배정한 각종 예목전(禮木錢) 및 부과금 중 하나인 필채(筆債) 6냥(兩)과 도부채(到付債, 자문을 발급한 수수료) 5전(錢)을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통례원이 발급해준 자문이다.

* 통례원은 나라의 의식을 맡아보던 관아로 1466년(世祖12) 이전의 통례문(通禮門)을 통례원으로 개칭하였고 1895년(高宗32)에는 장례원(掌禮院)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1895년 이전의 정해년(1827년)에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다.





갑오개혁 이후 세금 영수증



陰曆二年庚丁未條地稅良洞任負三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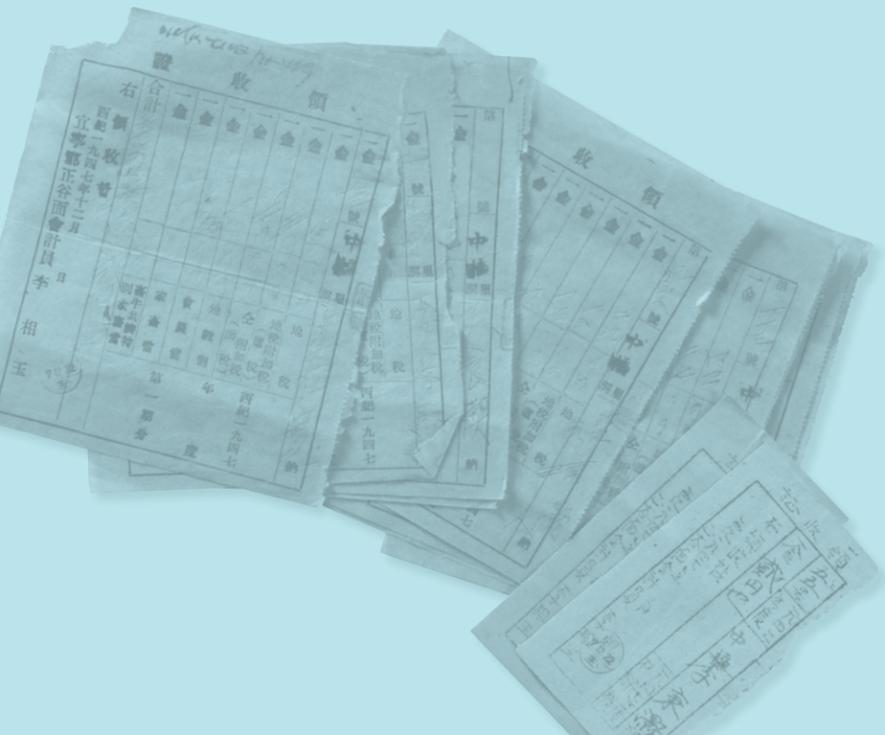
金拾貳月

或公里額受者也

丁未十月六日 江原西領收負省場站

稅務署

갑오개혁 이후 세금 영수증



갑오개혁,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를 거친 영수증

1894~5 1897~1910 1910~1945

조선조 말 근대적 제도개혁 운동인 갑오개혁(甲午改革, 1894년 7월~1895년 7월)의 추진으로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에 동화(同化)되어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생활 양식도 새롭게 변모하게 된다.

갑오개혁의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관제가 개편되면서 호조(戶曹)를 기본적으로 계승한 탁지아문(度支衙門)이 전국의 회계·출납·조세·화폐·은행 등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일원적으로 관장하게 되었고, 그 해 7월 10일자로 '모든 조세를 화폐로 내게 하는 금납화(金納化)'로 개편하였다. 따라서 자문(尺文)도 근대적인 '영수증'의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우선, 크게 달라진 것은 세목, 납세액, 납부일자, 수취자, 작성자의 이름 및 수결 등을 붓글씨로 직접 기재하고 관인(官印)을 찍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형화된 양식을 인쇄하여 필요한 부분만 기록하고 담당자와 담당기관의 인장을 찍어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규격과 정자(正字)체의 영수증을 통하여 작성이 편리하고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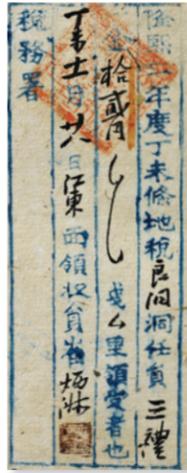
또한 금납화가 추진되면서 석(石), 필(疋) 등의 납부단위가 사라지고 재정수단의 일원화 개혁을 함으로써 근대적 재정의 효시가 되었다.

갑오개혁 기간 중인 1895년 5월에 발급된 오른쪽의 '지세(地稅) 영수증'을 보면, 특이하게 발급자란에 현재 국세청 공무원 직급체계와 동일한 '세무주사(稅務主事)'라는 명칭을 볼 수 있는데 이 유물을 통하여 100년이 훨씬 지난 그 당시의 조세행정 체계의 일면을 살펴볼 수가 있다.



1895년 세무주사(稅務主事)가 지세전(地稅錢)을 수납하고 발급해 준 영수증

‘세무주사(稅務主事)’라는 명칭의 사용 1894년 갑오개혁의 추진으로 호조(戶曹)를 계승한 탁지아문(度支衙門)의 조직은 탁지대신 아래 협판(協辦) 1명을 두고, 그 밑에 총무국·주세국(主稅局)·국채국(國債局)·은행국·회계국 등 10국을 두었으며 국에는 국장인 참의(參議)와 과장급인 주사(主事)를 두어 최초로 '세무주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세무주사(稅務主事)'라는 명칭은 대한제국기인 1906년 9월 관세관 관제(管稅官官制)의 실시에 따라 탁지부(度支部) 탁지아문을 계승 대신(大臣)의 관할 하에 세무감(稅務監), 세무관(稅務官), 세무주사(稅務主事)로 구성되는 관세관(管稅官)이 지방의 세무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사용하는 '세무서(稅務署)'라는 명칭도 1907년 6월 처음 등장하였다. (출처: 국세청 발간 『세정 100년 약사(略史)』, 96~97 페이지, 1996.)



1908년 지세영수증



1924년 납세영수증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꾼 뒤 고종 스스로 황제라 칭하면서 광무 개혁(光武改革)을 실시한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 1897년 10월 12일~1910년 8월 29일)로 접어들면서 영수증의 형태는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한 갑오개혁 당시의 것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띤다.

대한제국기인 1908년 ‘지세영수증(地稅領收證)’을 보면, 인찰지(印札紙, 미농지에 세로로 여러 줄을 쳐서 간을 만들어 인쇄한 종이)에 전서(填書, 빠진 글자를 채워서 써 넣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해당 지역인 강동면 영수원(領收員)의 성(姓)까지 인쇄되었다는 점이다. 이 유물에는 납세자 거주지와 이름, 납세액, 세금 납부일자, 징수담당자 이름은 간이 비어 있어서 손으로 직접 기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인쇄되어 있다. 이는 영수증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으로서 근대화된 세금영수증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재정적인 면 특히 세제면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용지와 형식면에서 일본의 영수증을 많이 차용한 것을 조세박물관 소장 영수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단에 영수증(領收證)·고지서(告知書)란 용어가 인쇄되고, 영수증 하단이나 뒷면에는 ‘납세선전(納稅宣傳)’ 문구 및 일정표가 칼라로 인쇄되어 화려하게 장식되기 시작한다. 이는 ‘납세하는 시기’나 ‘납세의 의무’ 등을 납세자에게 주입하고자 한 일제강점기의 ‘납세선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백에 인쇄된 ‘납세의무자의 심득사항(주의사항)’이나 ‘납세의 노래’ 등은 세금 징수에 대한 일본의 홍보 활동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참조 : 차병권, 『일정하 조선의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8
 국세청, 『세정100년약사』, 1996
 김옥근, 『일제하 조선재정사논고』, 일조각, 1994

지세 영수증

地稅領收證

21

1895년(고종32)

발급자 : 세무주사(稅務主事)

수취자 : 영광군(靈光郡) 중도면(中島面)

사옥연장(沙玉連長)

24.5 × 13cm

1895년(고종32) 5월 28일에 세무주사(稅務主事)가

영광군(靈光郡) 중도면(中島面)에서

납입한 지세전(地稅錢)에 대해 발급해 준 영수증.

靈光郡 中島面沙玉 連長 尊位

乙未條地稅錢 貳拾五兩 收到事

開國五百五年 五月 二十八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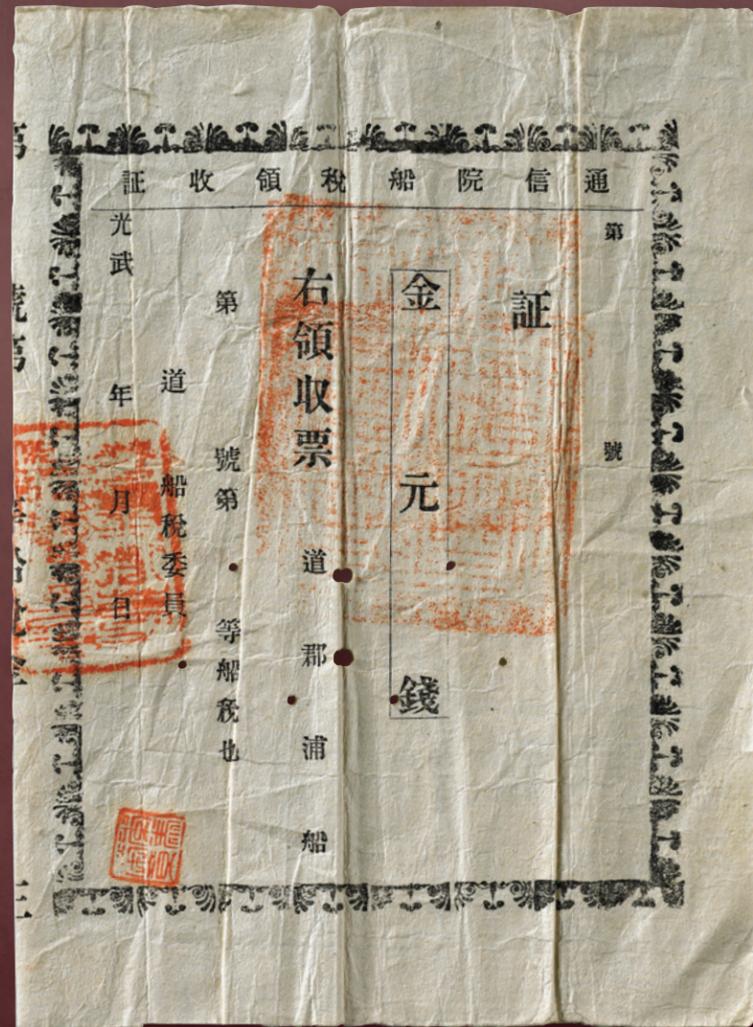
官 稅務主事



영광군에서 납입한 지세전은 25냥(兩)이다. 해당 사항을 칸으로 나누어 전서(填書)할 수 있도록 인찰지(印札紙)로 인쇄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시대의 영수증인 자문(尺文)이 서압(署押)을 써서 내려주는 것과는 달리 인장(印章)을 3개를 찍었다. 가로, 세로 각각 7.5cm인 큰 인장은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 납입한 금액 바로 아래에 조그마하고 둥그란 인장을, 그리고 세무주사 밑에 ‘세무주사지인(稅務主事之印)’을 찍었다. 이 문서는 특히 개국(開國) 505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895(고종32)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고쳐 개국 505년 1월 1일로 정하고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비롯되었다. 같은 양식의 문서가 7장이 있다.



통신원 선세 영수증

通信院船稅領收證

22

1900~1906년

사용처 : 통신원(通信院)

18.3 × 13.5 cm

통신원에서 어선과 상선에 선세(船稅)를 징수하고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영수증.

証收領稅船院信通	
第 號 第 等 船 稅 三	光武 年 月 日
(자문 글자)	道 第 號 船 稅 委 員 等 船 稅 也
	右 領 收 票 道 郡 浦 船
	金 元 錢
	証 第 號

통신원(通信院)은 1900년(광무 4) 전신·전화·전기·우편·수송 분야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하여 1906년에 폐지된 관청이다. 이 영수증은 통신원 서무국 아래 관선과(管船課)에서 선박·항로표시 등 수운사업감독을 담당하여 어선과 상선에 선세(船稅)를 징수하고 발급하기 위한 것이다.

날장의 인쇄본으로서 문서에는 기재된 내용이 없고 관인(官印)만 3과(顆)가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선세를 징수할 때 내용을 기록하고 발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서의 마지막에 '光武 年 月 日'이 찍혀 있어 통신원이 설치된 1900년부터 폐지된 1906년 사이에 사용했던 영수증임을 알 수 있다.

경주군 세전 영수증

慶州郡稅錢領收證

23

1904년(甲辰年, 광무8)

작성자 : 기계면(杞溪面)* 서기(書記) 박문섭(朴文燮)

수취자 : 기록 없음

19 × 9.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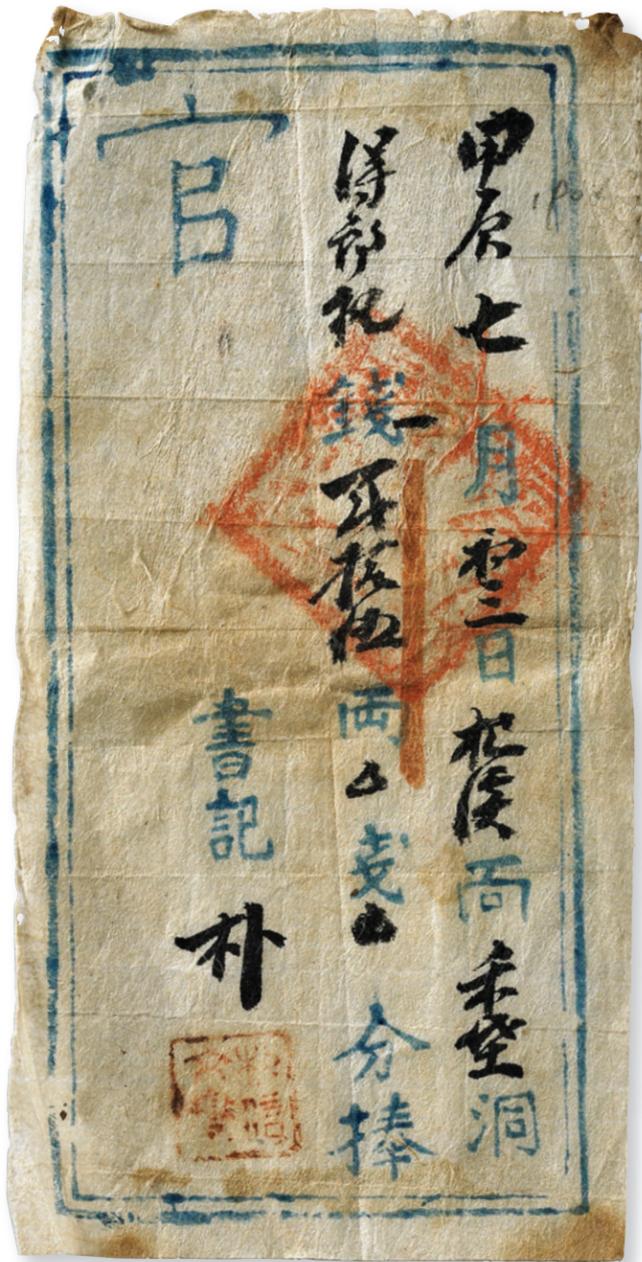
1904년(甲辰年) 7월 3일에 경주군(慶州君) 기계면(杞溪面) 화대동(禾垞洞)에 거주하는 ○○○(수취자 미상)에게 득군세(得郡稅, 군에서 징수하는 세금) 25냥을 징수하고 서기 박문섭(朴文燮)이 발급한 영수증

甲辰 七月 初三日 杞溪面 禾垞洞
得郡稅錢 貳拾伍兩 0錢 0分捧

官 書記 朴

본 영수증은 세금수납 담당자인 서기(書記) 박문섭이 자신의 성씨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捺印)하였다. 문서의 위쪽 상단에 ‘관(官)’이라는 글자는 조선시대의 청원문서나 자문 등에서 처결(處決) 또는 인준(認准)한 관부명(官府名)을 초서(草書)로 적는 것에서 연유하였다.

* 경주군 기계면 화대동은 현재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대리이다.



봉납서

捧納書

24

1904년(甲辰年, 광무8)

작성자 : 용인군(龍仁郡) 서기(書記)

수취자 : 정오천(丁汚川)

16 × 10.5cm

1904년(광무8) 용인군수가 수금면 방심리 정오천(丁汚川)에게 당해 결세를 수취한 후 발급한 영수증 성격의 문서.

捧納書

光武 八年 甲辰 十一月 十六日

水金面 防尋里 主戶 丁汚川

第 九号 ■■ 甲辰結 金額 參拾柒兩貳錢也

鄉長

郡守

書記

< 큰 官印은 “용인군수지인”으로 보임.

작은 정방형 印影은 안보이지만, 당시 갑오개혁이후 문서 행정식으로 봐서 “龍仁郡守之章”으로 추정. 원형의 私印은 흐려서 판독불가 >

봉납서(捧納書)란 금품을 받고 이를 확인해 준 문서를 말하며, 영수증과 유사한 성격의 문서이다. 1904년 11월 16일 수금면(水金面) 방심리(防尋里)에 거주하는 정오천(丁汚川)이 당해인 갑진년 결세 37냥 2전(錢)을 납부한 후 용인 군수로부터 이를 확인받은 세금영수증 성격의 문서이다.



큰 관인(官印)은 ‘용인군수지인(龍仁郡守之印)’으로 추정되며 ‘군수(郡守)’라는 글자 아래 작은 정방형 인장과 ‘향장(鄉長)’과 ‘서기(書記)’ 글자 아래 원형의 사인(私印)은 흐려서 판독이 불가하다.

지세* 영수증

地稅領收證

25

1908년(戊申年, 융희2)

발급자 : 세무서(稅務署) 강동면 영수원(江東面領收員) 최병숙(崔炳淑)

수취자 : 양동(良洞) 동임원(洞任員) 삼례(三禮)

19,8 × 9 cm

1908년(戊申年, 융희2) 11월 28일에 전년도인

1907년(丁未年, 융희1)도분 지세(地稅) 12원(円)을 삼례로부터

영수한 후 이를 수납했다는 증거로서 발행한 영수증.

隆熙二年度 丁未條地稅 良洞 洞任員 三禮

一金拾貳円 --- 莛 ㄆ里 領受者也

丁未十一月廿八日 江東面領收員 崔炳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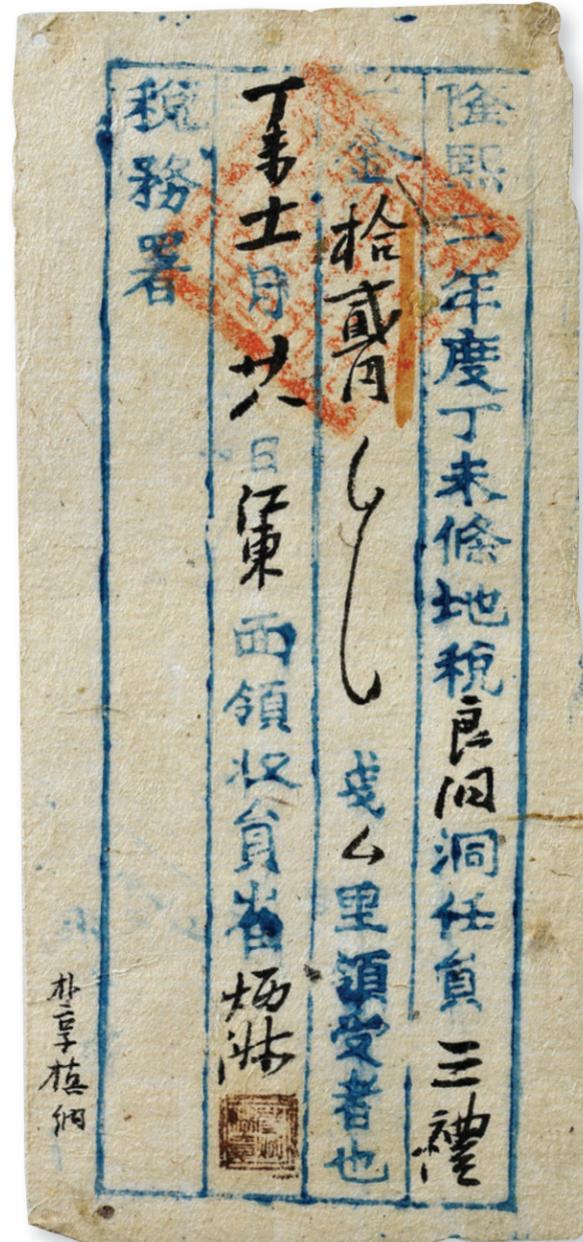
稅務署

朴享楨 納

문서의 내용을 보면 세무서에서 양동(良洞) 동임원(洞任員) 삼례(三禮)로부터 1907년(丁未, 융희1)도분 지세(地稅) 12원(円)을 1908년(戊申, 융희 2년) 11월 28일에 수납했다는 영수증이다. 강동면(江東面) 영수원(領收員)인 최병숙(崔炳淑)이 영수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성(姓)인 최(崔)까지 인쇄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영수증은 인찰지(印札紙, 미농지에 세로로 여러 줄을 쳐서 간을 만들어 인쇄한 종이)에 전서(填書, 빠진 글자를 채워서 써 넣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왼쪽 상단 관부명(官府名) 자리에 인쇄되어 있는 '세무서(稅務署)'는 대한제국기인 1907년 6월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명칭이다.

* '지세(地稅)'는 토지의 수익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일반적으로 면적·등급·수확고·지가(地價)등을 기준으로 부과하였다.



지세납세고지서 및 면영수증

地稅納稅告知書·面領收證

26

1909년(乙酉年, 융희3)

발급자 : 면장(面長)

수취자 : 이덕정(李德政)·이영일(李永日)

19,5 × 7~8 cm

우측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는 ○○면장이

1909년(己酉年, 융희3) 11월 24일에 안흥리(安興里)에 사는

이덕정(李德政)에게 지세(地稅) 2円 23莛 2厘를

납부하라는 고지서이며,

좌측 '면영수증(面領收證)'은 1909년(己酉年, 융희3)

11월 22일에 안흥리(安興里)에 사는

이영일(李永日)이 지세(地稅) 4円 35莛 2厘를

납부했다는 영수증.

納稅告知書

第一號 地稅 己酉年條 安興里洞 李德政 納

一金 貳円貳拾參莛貳厘

右 年 月 日 限^ㄱ야公錢領收員에게 納付^ㄴ함이可^ㄷ함

隆熙 三年 十一月 廿四日

面長

面領收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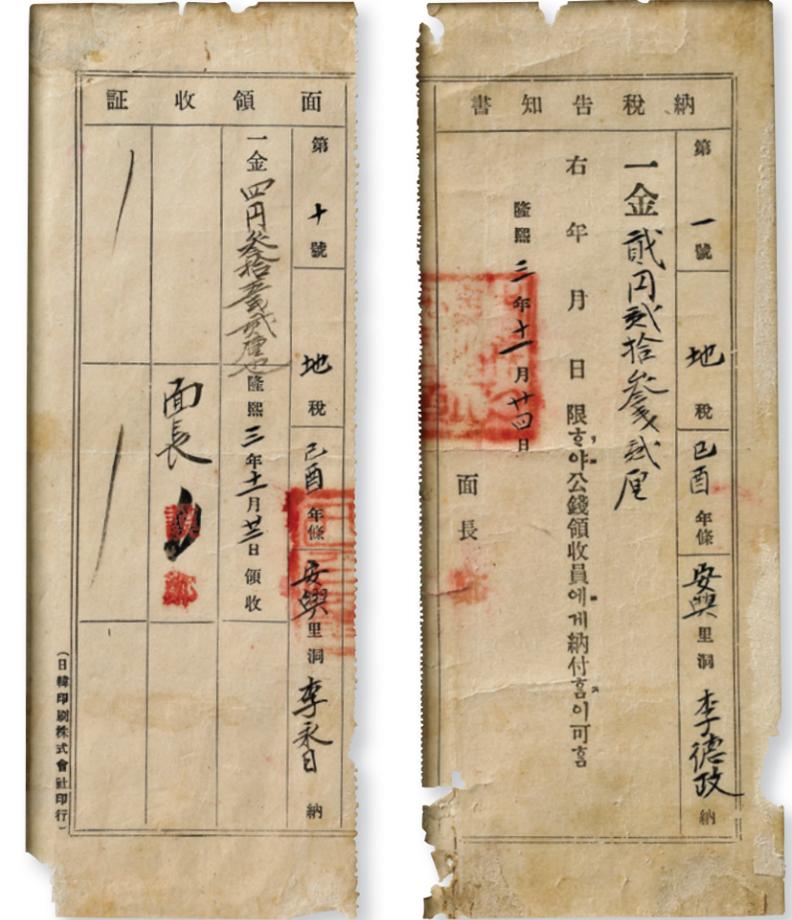
第十號 地稅 己酉年條 安興里洞 李永日 納

一金 四円參拾五莛貳厘也

隆熙 三年 十一月 廿二日 領收

面長 謨鄭

(日韓印刷株式會社印行)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1906.9)하고 한일신조약을 체결(1907.7)하는 등 한일합병(1910.8.22)을 하기 전 사실상 행정적으로 조선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라는 용어나 용지의 형식 역시 일본의 양식을 차용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요즈음의 세무공무원에 해당하는 '공전영수원(公錢領收員)'이라는 직책을 두어 세금을 징수토록 하였는데,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지방세무공무원인 셈이다.

지방세 납세영수증

地方稅納稅領收證

27

1924년(대정13)

발급자 : 보성군 문덕면 회계원 이창래(李暢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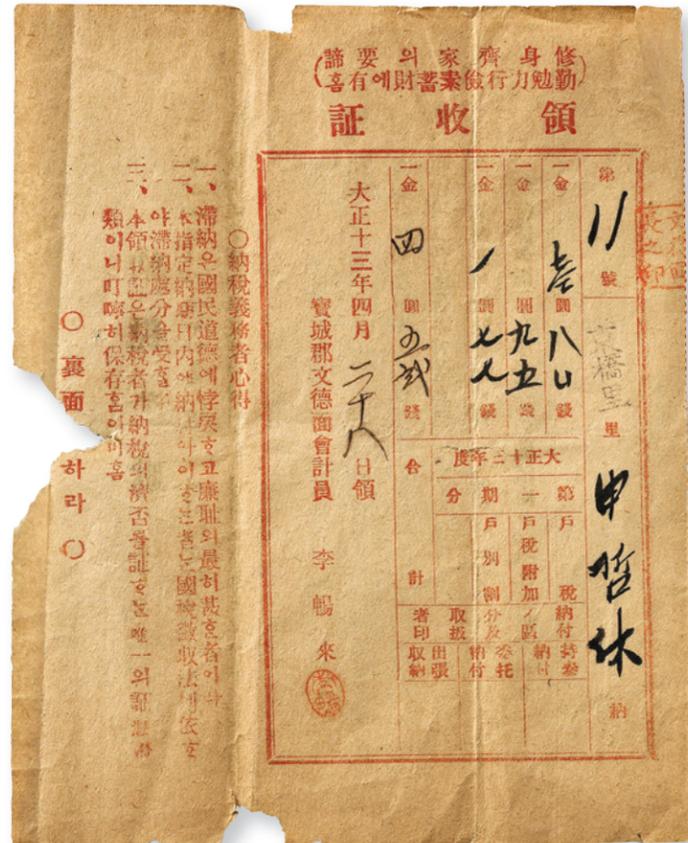
수취자 : 신철휴(申哲休)

17.8 × 14.3cm

1924년(大正13) 4월 28일에 보성군 문덕면 동교리 신철휴(申哲休)가 호세(戶稅) 등을 납부하고 문덕면 회계원인 이창래(李暢來)로부터 발급받은 지방세 납세영수증

大正十三年四月二十八日領	第一號	東橋里 申哲休納
寶城郡文德面會計員 李暢來印	一金四圓五貳錢	度年三十正大
	一金一圓七七錢	分期一第
	一金圓九五錢	者取分/納
	一金壹圓八〇錢	印及區付
		收出張
		納委託
		持納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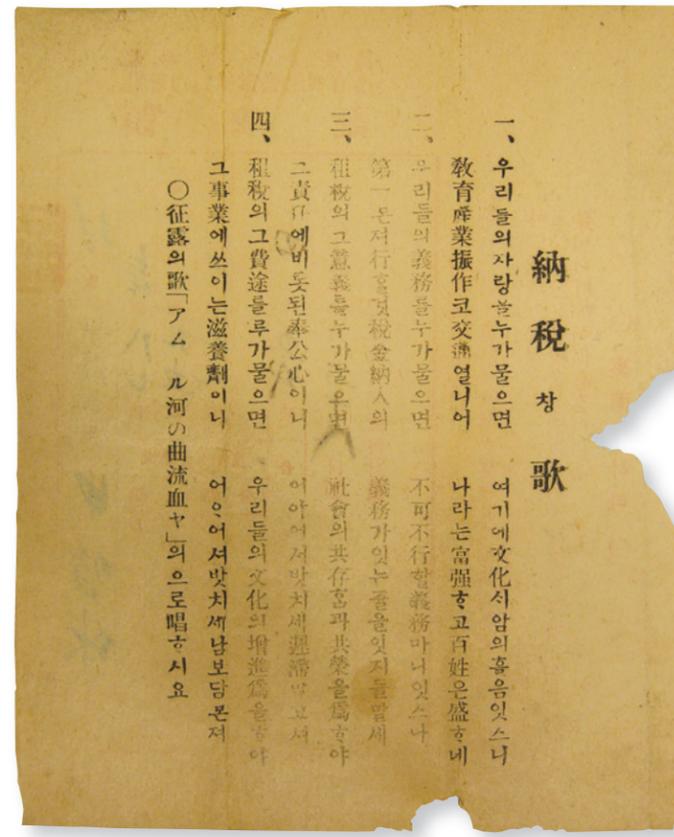
- 납세의무자의 심득(주의사항 풀이)
- 1. 체납은 국민도덕에 패려(悻戾, 언행·성질이 순직하지 못하고 비교임)하고 염치가 가장 심한자이다.
- 2. 본 지정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는다.
- 3. 본 영수증은 납세자가 납세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빙서류이므로 정히 보존하는 것이 좋다.



영수증 전면

보성군 문덕면 동교리에 사는 신철휴가 1924(大正 13)년도 제1분기 지방세를 납부하고 받은 납세영수증이다. 세목은 ‘호세(戶稅)*, 호세부가금(戶稅附加金), 호별할(戶別割)’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圓 80錢, 95錢, 1圓 77錢으로 합계 4圓 52錢이었다.

* 호세(戶稅), 호세부가금(戶稅附加金), 호별할(戶別割)은 일제강점기의 지방세 세목이다.
 - 호세(戶稅) : 당초 국세이었으나 1919년에 지방세로 이양된 도세(道稅) 중 특별세이다.
 - 호세부가금(戶稅附加金) : 학교비(學校費) 부과금 중 호세(戶稅)에 부가되는 세금, 학교비는 지금의 교육비와 유사하다.
 - 호별할(戶別割) : 면세(面稅) 중 특별세이다.



영수증 후면

이 납세영수증의 뒷면을 보면 ‘납세의 노래’가 인쇄되어있는데, 영수증 뒷면을 활용하여 납세홍보 및 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1910~1945)에 일본의 근대화에 의한 근대적 의미의 납세영수증이며, 내용은 주로 ‘납세의 의무’와 ‘납세가 이바지 하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을 담고 있다.

- 납세창가 ▶ 영수증 이면(裏面 뒷면)
- 1. 우리의 자람을 누가 물으면 여기 문화창가의 흥을 짓고
 민야·산악·지각하고자 귀를 열거고 나리니 부강유기 불천이 편정유복
- 2. 우리의 의무를 누가 물으면 이 행하지 않을 수 없니 의무만 이 것이냐
 제일 먼저 행할 것 세미단민의 의무가 정니 세미에 정지를 말세
- 3. 조세의 의무를 누가 물으면 사회의 편익함과 민중에게 의무로
 그 책임에 비롯된 봉양신공(奉公)이니 어아 어서 바치세 지체 말고서
- 4. 조세의 그 비도(費途) = 용도(用途)를 누가 물으면 우리의 문화 창건의 의무로
 그 사업에 쓰이는 자양제이니 어아 어서 바치세 납보다 먼저

영수증 묶음

領收證綴

28

1938년~1941년

발급자 : 경성부금고(京城府金庫) 외

수취자 : 김지환(金芝煥)외

19.4 × 15.4 cm

각종 영수증 모음.



이 영수증 묶음은 일제강점기 말의 영수증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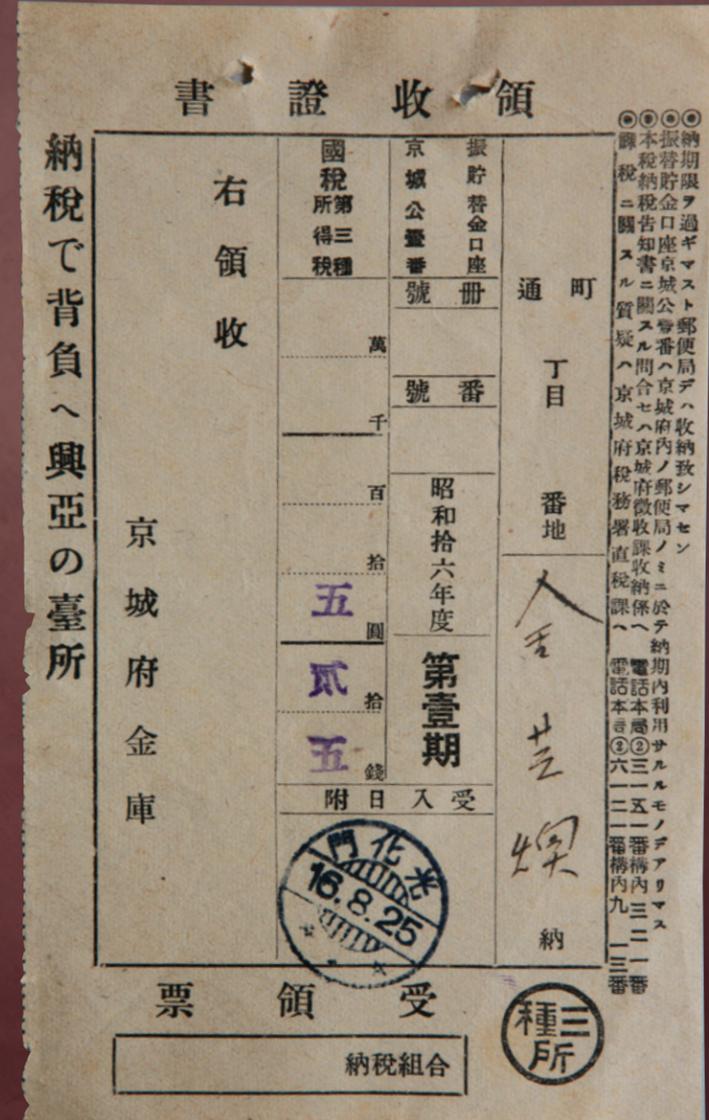
이 중 국세(國稅)인 제3종 소득세 영수증서(領收證書)는 9건이며, 영수증서의 하단에는 '삼중소(三種所)*'석자가 작은 동그라미 안에 굵게 인쇄되어 있다. 지세(地稅)와 지세부가세의 영수증은 구분하여 발급되었고 지세의 영수증은 7건이며, 하단에 '지(地)'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반해 지세부가세의 영수증서는 1건으로 '지부(地附)'로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급수료(給水料)에 대한 영수증은 모두 11건으로 수전(水栓)번호와 함께 전용제이종급수료(專用第二種給水料)가 적혀 있다. 이들 영수증을 살펴보면, 1939년에는 수도본국과 수도과 영락정분실(水道課永樂町分室)·용산출장소 수도계(龍山出張所水道係)·수도과 종로분실(水道課鐘路分室)·영등포출장소(永登浦出張所)·동부 출장소(東部出張所)로 구성되었던 것이 1941년에는 수도본국을 제외하고 모두 수도영업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4건인데 시뇨(屎尿:똥오줌)는 1원 20전 진개(塵芥:쓰레기)는 1원 80전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성세무서(京城稅務署)에서 발급한 영수증서로는 조세(租稅)에 대한 것이 3건 있다.

이러한 각종 세에 관한 조희는 경성부 세무과 부과계(賦課係)에서 관리하였다.

※ 1934년 창설된 일반소득세 종류
● 제1종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 소득세
● 제2종 소득세: 공·사채 이자, 은행 예금 이자 등 원천 소득세
● 제3종 소득세: 개인 소득세
출처: 국세청 발간 「세정 100년 약사(略史)」, 291 페이지, 1996.



지세·임야세 등 영수증 묶음

地稅·林野稅等領收證綴

29

1947년

발급자 : 경남 의령군 정곡면(正谷面) 회계원 이상옥(李相玉)

수취자 : 정곡면 중교리(中橋里) 주민(이병호 등)

12.5 × 10.5cm, 5 × 9cm

1947년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주민 이병호(李秉濂) 외 9명이 지세·임야세 등을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첩.

수취인은 경남 의령군 중교리 주민 10명이며, 발급자는 정곡면사무소 회계원 이상옥(李相玉)이었다. 이 문서는 중교리의 마을대표(이장)가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취합하여 면사무소에 일괄 납부한 뒤 받은 영수증으로 추정된다.

원래 이 영수증은 납부자 개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어떤 사유가 생겨 전달해지지 못하고 대표자(이장)가 일괄 보관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직후 미군정 등 어수선한 정국 상황 속에서 세금 납부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證 收 領

右領收합 西紀一九四七年十二月日 宜寧郡正谷面會計員李相玉	合計	一金	一金	一金	一金	一金	一金	一金	第號
		畜牛共濟特	家畜當	會員當	地稅割	全附加稅 (面稅)	地稅附加稅	地稅	里洞納

證 收 領

右領收합 西紀一九四七年 月日 正谷面會計員李相玉	一金貳円也	五五号
	一九四七年度	中橋
林野稅	一九四七年度	李秉濂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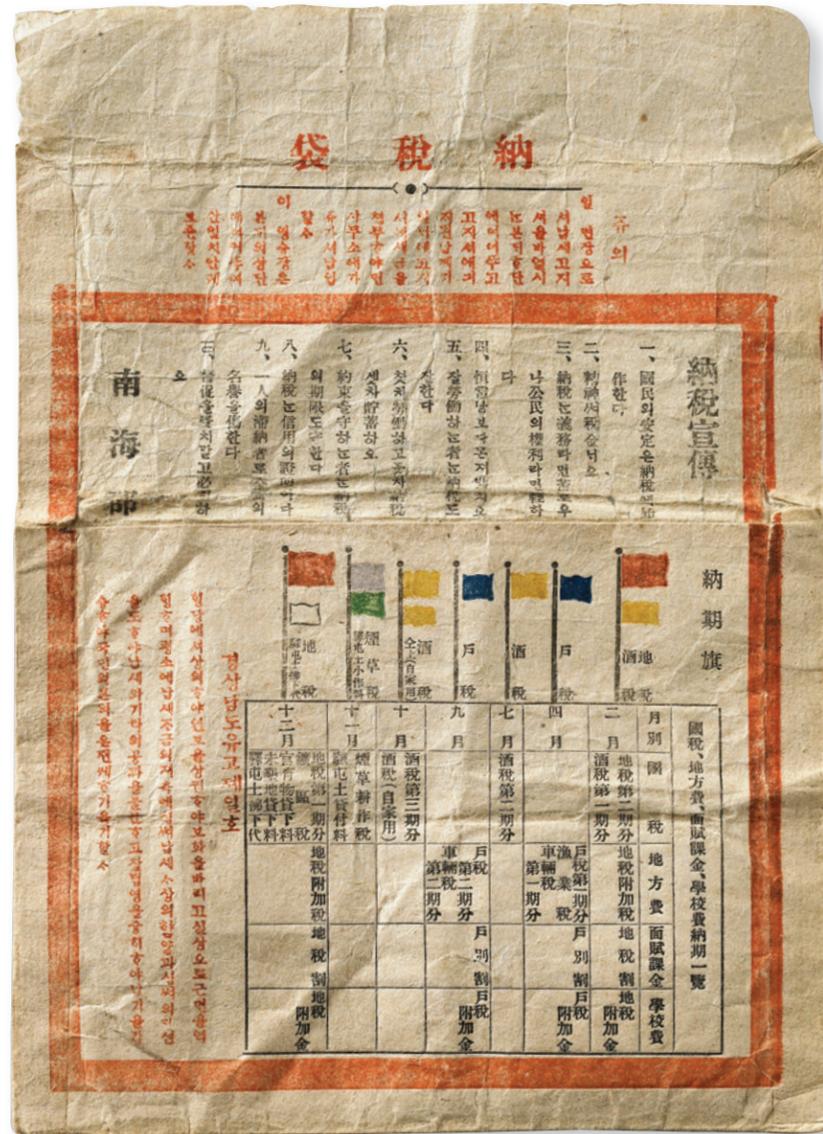
납세대

納稅袋

30

미상(1945년 이후로 추정)
발급자 : 경상남도 남해군(南海郡)
수취자 : 남해군민
27 × 19 cm

1945년 이후에 남해군에서 만든
세금 영수증 및 고지서를 보관하는 종이 주머니.



*역둔토
역도세(驛路稅)라는 이름으로 걷히다가 1908년부터 세외(稅外) 수입으로 대체되어 역둔토소작료·역둔토불하대(불하대는 개인에게 팔아넘긴 역둔토를 말함) 등의 이름으로 걷히게 된다.
역도세는 1894년 갑오개혁 이래 폐지된 역도(驛土, 교통의 중심지에 설치된 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된 전답) 및 둔토(屯土, 군영 외에 중앙의 각 관청 및 지방 道郡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여한 국유지, 개간지 등)에 대한 소작료와 별도로 소작인으로부터 징수한 지세로서 궁내부(宮內府, 1894년 갑오개혁 때 신설되어 왕실 업무를 총괄한 관청)가 이를 관리하였다.

납세대(納稅袋)는 세금영수증 및 고지서를 보관하는 종이주머니를 말한다.

이 납세대는 경상남도 남해군(南海郡)에서 인쇄한 것으로 주의 사항을 맨 위에 두고 그 밑에 납세선전(納稅宣傳)에 대한 10개 항목을 인쇄하였다. 그 밑에는 납세기(納稅旗)를 7종류 그려 놓았으며 맨 밑에는 각종 세금의 납기 일람표(納期一覽表)를 그려 넣었다.

시기별로 보면 2월과 12월은 지세(地稅: 붉은색 깃발), 2월·7월·10월은 주세(酒稅: 노란색 깃발), 4월과 9월은 호세(戶稅: 파란색 깃발), 11월은 연초세(煙草稅: 회색 깃발), 11월과 12월은 역둔토*소작료(驛屯土小作料: 연두색 깃발)와 역둔토불하대(驛屯土拂下代: 흰색 깃발)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것을 알 수 있다.

納稅宣傳

문
一, 國民의 安定은 納稅에 始作한다 二, 精神써 稅金니오 三, 納稅는 義務라면 苦고우나 公民의 權利라면 輕하다 四, 恒常 남보다 먼저 받치오 五, 잘 勞働하는 者는 納稅도 잘한다 六, 첫차 勞働하고 뒷차 納稅 셋차 貯蓄하오 七, 約束을 守하는 者는 納稅의 期限도 守한다 八, 納稅는 信用의 證明이다 九, 一人의 滯納者로 全部의 名譽를 傷한다 一〇, 督促을 受치 말고 必히 하오 南 海 郡
풀이
1. 국민의 안정은 납세에서 시작한다. 2. 정신 써서 세금 내시오. 3. 납세는 의무라고 하면 괴롭지만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면 괜찮다. 4. 항상 남보다 먼저 받쳐라. 5. 일 잘 하는 사람은 세금도 잘 낸다. 6. 첫째 일하고 둘째 세금 내고 셋째 저축하라. 7. 약속을 지키는 자는 납세의 기한도 지킨다. 8. 납세는 신용의 증명이다. 9. 한 명의 체납자가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10. 독촉을 받지 말고 필히 납부하시오. 남 해 군

驛屯土拂下代	驛屯土小作料	酒稅 全上(自家用)	戶稅	酒稅	戶稅	酒地稅	納稅旗
十二月	十一月	十月	九月	七月	四月	二月	月別
未墾地貨下料 官有料	地稅第一期分 鐵區稅	酒稅第三期分酒稅 (自家用)		酒稅第一期分		地稅第二期分酒稅 第一期分	國稅
地稅附加稅			戶稅第一期分 車輛稅 第一期分		戶稅第一期分 漁業稅 第一期分	地稅附加稅	地方費
地稅割			戶別割		戶別割	地稅附加金	面賦課金
附加金			戶稅附加金		戶稅附加金	戶稅附加金	學校費

國稅 地方費 面賦課金 學校費 納期一覽

안창렬(安昌烈)의 문경현감 부임시 자문철(尺文綴)

김학수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1. 안창렬은 어떤 사람인가?

안창렬은 자가 순가(順可), 호는 동려(東旅)·운정산인(雲汀散人),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1847년(헌종13) 경상도 안동 풍산의 원당리(元塘里)에서 안병례(安秉禮)와 동래정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1925년 79세로 사망하기까지 학자·관료로서 착실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었다. 이 땅에 성리학을 도입한 대학자 안유(安裕)의 방계 자손이었던 그의 선대는 일찍이 상경종사하여 고려말~조선초까지는 개성에 살았고, 이후 예천을 거쳐 안동에 정착한 것은 15세기 중후반이었다.

안동 정착 이후 이 가문은 학문과 벼슬, 충절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며, 모범적인 가풍(家風)을 만들어 갔다. 그 중심에는 안창렬에게 10대조가 되는 정봉(定峯) 안담수(安聃壽:1552-1627)라는 인물이 있었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선생의 문인이었던 안담수는 1603년 52세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 전적·사예, 사헌부 지평, 성균관 직강, 사헌부 감찰, 예조정랑, 예안현감, 전주 제독관

등 내외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류성룡 사후에는 병산서원(屏山書院)의 건립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1614년 병산서원에 류성룡의 위패를 봉안할 때 문인을 대표하여 첫 잔을 올린 사람이 바로 안담수였다. 안담수의 이날의 엄숙한 모습은 그의 자손들이 퇴계(退溪)⇒서애학(西厓學)을 가학(家學)으로 이어 나가는 명분이자 이유가 되었다.

영남 지방의 여느 사대부 가문과 마찬가지로 안창렬 집안도 인조반정 이후에는 벼슬길이 주어지지 않았다. 9대조 안우(安遇:1572-1636)가 통덕랑의 품계를 가졌을 뿐 내내 백두(白頭) 처사(處士)로 내려왔고, 작은 할아버지 안윤시(安潤蓍:1786-1867)가 문과에 합격하여 대사헌을 지낸 것은 깜짝 놀랄만한 이력이었다. 이처럼 집안의 사환(仕宦)은 보잘 것 없었지만 학식과 문장은 끊어지지 않았고, 사림의 명가답게 예의와 범절도 몹시 엄격했다. 비록 출세와는 동떨어져 있었지만 300년 동안 올바른 학문과 곧은 행실을 지향했던 안씨 일문의 삶의 자세 속에는 정신적 풍요로움이 있었다. 집안에 이런 전통이 있었기에 안창렬이 단신으로 상경하여 우수한 문벌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도 주눅들지 않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항심(恒心)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안창렬은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웠지만 공부만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릴 때는 작은 할아버지 치재(恥齋) 안윤시에게 배웠고, 조금 자라서는 류성룡의 후손으로 영남의 대유학자였던 계당(溪堂) 류주목(柳疇)의 문하에서 학업을 연마했다. 장성하여 정치의 기회가 주어지면 임금의 마음부터 바로잡겠다던 포부를 지녔던 그는 틈틈이 과거 공부에도 열을 올렸지만 합격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지자 1868년(고종5)에는 정든 고향을 떠나 순흥의 석교리(石橋里)로 이사하여 주경야독하며 출세의 꿈을 키웠다.

1882년(고종19)에 발생한 임오군란은 분명 역사의 아픈 기억이지만 안창렬에게는 더없이 좋은 발신(發身)의 기회가 되었다. 군란을 겪으면서 국정이 흔들리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고종은 타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만백성들에게 '구언(求言)'이란 명목으로 자문을 구했다. 이 때 안창렬은 자신의 생각을 10가지로 압축한 상소를 올렸다. '학문(學問)에 힘쓸 것', '궁중

(宮中)을 정비할 것', '언로(言路)를 확대할 것', '왕의 스승을 가려 뽑을 것', '세금을 줄일 것' 등으로 구성된 10조소는 어느 하나 약석(藥石)이 아닌 것이 없었다.

〈표 1〉 안창렬의 관직 수행 현황

연도	관직명	주요 치적	비고
1883년(고종20)	本市署文案	- 치밀한 업무 처리로 조정의 인정을 받음	閔台鎬 추천
1884년	平市署主簿		特進
1885년	司饗院主簿		
	禮賓寺主簿		
	義禁府都事		
1886년	貞陵令		
	軍司馬		
	聞慶縣監	- 기민 구제에 노력함 - 학문 장려에 힘씀	頌德碑
1888년	榮川郡守	- 鄉飲酒禮 등 예법의 확대 시행 - 학문을 장려함	
	河陽縣監	- 봉급을 덜어 郡政 확충 - 고종으로부터 表裏를 하사받음	
1889년	伊川府使		
	麟蹄縣監		
	歙谷縣令	- 학행 및 孝劄이 뛰어난 자 우대	
1894년(고종31)	槐山郡守	- 조정의 지원금 및 자신의 봉급으로 백성 구제 - 효행이 지극한 부녀자를 원조함	頌德碑
1901년(광무4)	通政大夫	- 1884년 호종한 공로를 포상	



이에 감동한 고종이 그를 불러 상소문을 직접 낭독케 하자 안창렬은 막힘없이 글줄을 읽어내려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 때 그는 고종의 눈에 들었고, 고뇌를 담아 지은 상소문은 『일성록(日省錄)』에 실려 국가 사료의 한 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1883년, 고종은 친군좌우영(親軍左右營)이라는 호위 조직을 창설하여 민을만한 사람들을 배속시키고자 했다. 막 충원이 시작될 무렵 대신 민태호(閔台鎬: 1834-1884)가 느닷없이 안창렬을 추천하자 고종은 그 자리에서 문서를 담당하는 직임인 ‘군영문안(軍營文案)’에 임명했다. 이로써 안창렬은 꿈에 그리던 관료가 되었다. 그것도 왕을 호위하는 부서의 요직을 맡았으니, 그 영예로움은 비할 데가 없었다. 기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인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나 고종이 파천할 때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왕을 호위하였고, 그 보답으로서 고종은 그를 6품으로 승진시켜 평시서(平市署) 주부에 임명했다.

이후 그는 탄탄대로를 달리며 주어지는 직책마다 최선을 다하며 신뢰에 보답했다. 1885년에는 사용원

(司饗院)·예빈시(禮賓寺)의 주부를 거쳐 의금부(義禁府) 도사를 역임했고, 1886년에는 정릉령(貞陵令)을 거쳐 문경현감으로 나가라는 명을 받게 된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최초의 외관직이었다. 이제 그는 백리의 땅을 다스리는 고을원으로서 그간에 관료로서 온축(蘊蓄)한 경륜과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열정과 포부가 남달랐기에 날이 갈수록 치적은 쌓여갔고, 선정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인근 고을로까지 전파되어 갔다. 그의 다스림은 ‘간소함’과 ‘위엄’을 강조한 ‘간엄(簡嚴)’의 리더십이었다. 매달 그는 경내의 선비들을 향교에 모아 경전(經典)을 강의 했고, 가난한 백성을 어루만지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감사는 그의 고을경영을 ‘유림정신에 바탕한 검약과 절도(節度)’의 다스림으로 인정해 주었고, 백성들이 세운 송덕비에는 ‘배움을 실천한 어진 관료’라는 찬사가 새겨졌다.

후술하겠지만 안창렬은 문경현감에 부임하기에 앞서 무려 175냥의 수수료를 물었지만 부임 이후 그가 보여준 행정은 맑고 깨끗하기 이를 데 없었고, 두 해 남짓한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홀민(恤民)의 정치를 몸소 실천했던 것이다.

이후 안창렬은 영천군수(1888), 하양현감(1888), 이천 부사(1889), 인재현감(1889), 흡곡현령(1889)을 거쳐 1894년에는 괴산현감을 수행하며 목민관으로서의 직분에 충실을 기했다. 1888년 영천군수 재직 때는 예속의 강화와 학문의 장려에 노력했고, 1889년 하양 현감으로 가서는 자신의 봉급을 털어서까지 군정의 확충을 기했으며, 1894년 괴산군수 재직시에는 동학 혁명으로 피폐해진 백성의 삶을 구제하는데 헌신했다. 이로써 그는 약 10여년에 걸친 관직 생활을 마무리 하게 되지만 1901년(광무4)에는 갑신정변 당시 호종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상관의 품계인 통정대부로 승진 했다.

안창렬은 안동에서 태어나 순흥에서 성장을 했고, 54세 되던 1900년에는 예천 맞질(渚谷, 예천군 용문면)로 거처를 옮겼다. 그가 만년을 보내고, 자손들이 뿌리를 내려 산 곳도 바로 맞질이며, 문경현감 부임시에 발급된 자문첩의 원 소장처도 이곳이다.

〈표 2〉 안창렬의 문경현감 부임시 자문 현황

순번	징수명목	징수가	해당 관청	발행 일자
1	參謁債	5냥 5전	吏曹	丙戌(1886) 12월
2	曹所古風債	5냥 5전		〃
3	曹所鋪陳債	10냥 5전		〃
4	新除授筆債/到付債	4냥/5전	天官(吏曹)	〃
5	解由作紙	15냥 5전	吏曹	〃
6	新除授筆債/到付債	6냥/5전	內閣	〃
7	新除授筆債/到付債	3냥/5전	藝文館	〃
8	新除授筆債/到付債	3냥 5전	翊衛司	〃
9	新除授筆債	3냥	侍講院	〃
10	新除授鋪陳債/到付債	5냥/5전	弘文館	〃
11	平市署先生禮木/到付債	禮木4필(代錢 8냥)/5전	平市署	〃
12	署經債	20냥 5전	吏曹	丁亥(1887) 정월
13	新除授筆債/到付債	6냥/5전	弘文館	〃
14	發行債	正木1필(代錢 2냥)	司憲府	〃
15	署經債	正木1필(代錢 2냥)		〃
16	新除授筆債/到付債	2냥/5전		〃
17	到任債	正木1필(代錢 2냥)	承政院	〃
18	堂上筆債	3냥		〃
19	近仗軍士行下錢(新定式)	4냥	侍講院	〃
20	教旨安寶債/到付債	5냥/5전	尙瑞院	〃
21	近仗軍士行下錢(新定式)	4냥	兵曹	〃
22	筆債/到付債(新定式)	5냥/5전	通禮院	〃
23	肅拜債	4냥 5전		〃
24	奇別胥吏都行下錢	4냥	議政府	〃
25	到任債	正木1필(代錢 2냥)	司諫院	〃
26	新除授債	正木1필(代錢 2냥)		〃
27	發行債	正木1필(代錢 2냥)		〃
28	署經債	正木1필(代錢 2냥)	天官(吏曹)	〃
29	待令胥吏處新除授筆債/到付債	3냥/5전		丁亥(1887) 2월
30	新除授筆債/到付債	3냥/5전	吏曹	〃
31	堂後筆債	2냥	承政院	미상
32	肅拜舉行使令都行下錢	20냥		〃

안창렬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두문불출하며 시주(詩酒)로서 삶을 보내다 1925년 3월 21일 7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사망하기 얼마 전에 지은 '자서전' 『東旅自傳』에서 그는 스스로를 '관료로서 혁혁한 치적을 남기지도 못한 졸사(拙士)'로 기술하였지만 어디까지나 겉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2. 안창렬의 문경현감 부임시 '자문철'의 형태와 내용

조세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안창렬의 자문철은 1886년 12월 안창렬이 문경현감에 임명된 이후 이듬해인 1887년 정월 임지로 부임할 때까지 중앙 관서에 납부한 각종 수수료의 영수증철이다.

이희승의 『국어사전』이나 신용철의 『새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자문을 '이두 용어로서 지방관아에서 조세를 호조에 바치고 받은 영수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쓰임이 훨씬 넓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추출한 자문의 한 두가지 용례이다.

- ① 어느 사람이든 물건을 관청에 납부하면 관청에서는 납부한 물건을 적어주는데, 이를 자문(尺文)이라 한다. (『예종실록』 원년8월 정묘)
- ② 무릇 잡물을 관에 납부한 후에는 반드시 작은 종이에 증표로 써 주는 것을 자문(尺文)이라 하는데, 대개 이는 방언이다. (『명종실록』 21년4월 신미)

즉, 자문은 ①우리나라에서만 쓰인 구결(口訣)이고, ②중앙 및 지방 관청에서 받은 돈이나 물건에 대하여 발급한 영수증이며, ③문서(영수증)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문서', 곧 자문(尺文)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안창렬이 문경현감 부임과 관련하여 영수한 자문은 총 32장이다. 시기적으로는 1886년 12월에서 이듬해인 1887년 2월까지 약 3개월 [일수로는 약 40일]에 걸쳐 있다. 교지 등 각종의 고문서 및 『동려문집(東旅文集)』(안창렬지)등의 기록에 따르면, 안창렬은 1886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정기인사[都目政事]에서 문경현감에 임명되었고, 1887년 정월 초하룻날 고종에게 사은숙배했으며, 정월 18일에 폐사(陞辭)

했다. 부임에 따른 제반 공식 절차를 거친 뒤에 그가 임지로 가기 위해 서울을 떠난 것은 정월 19일이었다. 안창렬은 임지로 떠난 뒤에도 잡부금의 징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1887년 2월 이조에서 발급한 두 건의 자문이 이를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

안창렬은 임명에서 부임 직후까지 40일에 걸쳐 32개 명목으로 총 175냥의 잡부금을 납부했다. 해당 관청은 이조(8건), 내각(1건), 예문관(1건), 익위사(1건), 시강원(2건), 홍문관(2건), 평시서(1건), 사헌부(4건), 승정원(3건), 상서원(1건), 병조(1건), 통례원(2건), 의정부(1건), 사간원(4건) 등 14개 부서이다. 이조 및 양사로 불리는 사헌부·사간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전자는 인사 부서이고, 후자는 인사의 적합성을 따지는 심의 부서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안창렬이 이들 부서에 납부한 총액 175냥을 정목(正木)으로 환산하면 87필(疋)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액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안창렬은 32개의 자문을 꼼꼼히 챙겨 납부한 순서대로 점련(粘連), 즉 풀로 붙여 보관해 두었다. 이들 자문은 한지(韓紙)에 목판

으로 인쇄한 양식을 지니고 있고, 크기는 모두 세로 30cm, 가로 20cm 이내이다. 영수의 표시로서 납부한 연월일과 납부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해당부서의 직인을 날인했다. 납부자는 '안창렬'이라는 성명 대신 '문경(聞慶)' 또는 '문경현감안(聞慶縣監安)'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징세 대상이 어느 개인이 아니라 특정 직임(特定職任)에 있었음을 뜻했다.

앞의 표에 제시된 것처럼 부과된 명목 중에는 참알채(參謁債), 고풍채(古風債), 포진채(鋪陳債), 해유질지(解由作紙), 필채(筆債), 평시서선생예목(平市署先生禮木), 서경채(署經債), 근장군사행하전(近仗軍士行下錢), 교지안보채(教旨安寶債), 숙배채(肅拜債), 숙배거행사령도행하전(肅拜舉行使令都行下錢), 도임채(到任債)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참알채(參謁債)'는 새로 수령에 임명된 사람이 부임하기 전에 인사차 상관을 찾아볼 때 예물로 바치는 공식적인 비용이었는데, 관행상 열흘 이내에 납부해야 했다. '고풍채(古風債)'는 고풍에 따라 직속상관에게 바치는 예물 성격의 잡부금인데, 새로 수령에



임명된 자의 경우 인사부서의 수장인 이조판서에게 바치는 것이 관례였다. ‘포진채(鋪陳債)’는 이조의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연회비였고, ‘해유질지(解由作紙)’는 수령의 인수인계서인 해유문서의 작성에 필요한 종이 대금이다. 여기서 ‘作紙’는 이두문으로서 ‘질지’로 읽는 것이 옳다.

‘필채(筆債)’는 문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받는 돈으로서 ‘필묵값’ 또는 ‘붓값’이라 할 수 있는데, 안창렬의 경우 이조, 내각, 예문관, 익위사, 시강원, 홍문관, 사헌부, 승정원, 통례원 등에 이를 납부했다. ‘평시서 선생예목(平市署先生禮木)’은 전에 몸담았던 부서에 내는 일종의 사례금인데, 안창렬은 1884년 갑신정변 때 고종을 호위한 공으로 평시서 주부로 특진한 바 있었다.

‘서경채(署經債)’는 인사 서경의 대가로 사헌부·사간원에 납부하는 사례금이고, ‘근장군사행하전(近仗軍士行下錢)’은 의전을 맡은 군사들에게 쥐어 주는 용돈이다. 상서원에 납부한 ‘교지안보채(教旨安寶債)’는 인사발령장인 고신에 어보를 찍는

수수료인데, 어보를 관리하는 부서가 바로 상서원이었다. 국왕이 인사를 행하면 사헌부·사간원에서 그 타당성을 심의하고, 인사 발령 문서에 어보를 찍는 것은 국가행정의 공식적 절차인데, 여기에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했던 당시의 관행이 자못 의아스럽다.

‘숙배채(肅拜債)’는 왕에게 사은숙배할 때 내는 수수료이다. 숙배를 위해서는 사전에 의전을 익혀야 했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통례원이다. 아마도 이 돈은 숙배에 따른 예행연습을 도운 통례원의 하료들에게 주는 수고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숙배 예절은 통례원에서 익히지만 숙배 절차를 시행하는 부서는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이었다.

‘숙배거행사령도행하전(肅拜舉行使令都行下錢)’은 숙배 행사를 주관한 승정원 소속의 사령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주는 돈인데, 승정원에서 징수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돈이 사령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도임채(到任債)’는 임지에 도착하는 명분의 잡세로서 주로 사헌부, 사간원에서 징수하고 있다.

안창렬의 자문에서 유념할 것은 관인(官印)의 현황이다. 32개의 잡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조, 내각(奎章閣), 예문관, 익위사, 시강원, 홍문관, 평시서, 사헌부, 승정원, 상서원, 병조, 통례원, 의정부, 사간원 등 14개 중앙 관서로부터 영주증을 발급받았다. 이들 영수증에는 해당 관서의 관인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 19세기 후반에 통용되었던 중앙 관서의 관인의 형태와 활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3. 나머지 말

구한말의 관직사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그다지 곱지 않다. 여기에는 매관매직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곧고 바른 관료가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이런 생각이 결코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며, 안창렬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종의 부임 수수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역사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무리 부정이 판을 치는 사회라 하더라도 모든 관료가 부정한 것은 아니고, 거액의 부임 수수료를 냈다고 해서 그 관리가 반드시 수탈을 일삼는 것은 아니다. 안창렬의 자문철은 어느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시대적 관행의 산물이지 특정 개인과 혼효시켜 해석하고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안창렬의 문경현감 부임시 자문철은 그가 살던 시대의 관직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제도를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고민의 초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高宗實錄』, 『東旅文集(安昌烈著)』 『古文書集成』 43-안동 갈전 순흥안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정구복, 『조선시대 자문(尺文)에 대한 연구-수령이 새로 임용될 때의 비용-』, 『고문서연구』 11, 한국고문서학회, 1997.



작은 문서로 옛 세상을 엿보다

유물대여	국립중앙도서관 신한은행 한국금융사박물관
자료협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총괄	이현동
기획	이전환 구진열
진행	박기화 신현구
전시·도록	박기화 최윤희
논고	김학수
탈초및정서	김성갑
교열	김건우
교정	박기화
보존처리	이영호(문화사)
전시그래픽	(주)씨티파트너 박정신 장메이 송경복
아트디렉터	최창호 (주)씨티파트너
디자인	장메이 (주)씨티파트너
사진	필스튜디오
인쇄	삼화인쇄
발행	국세청 조세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Tel. 02)397-1633
발행일	초판 2010년 10월
제작	(주)씨티파트너 서울시 중구 신당동 377-47 Tel. 02)2232-8877

비매품

copyright © 2010 조세박물관
designed by CITIpartner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조세박물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